2025 9 Monthly Magazine
통 권 262호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세무회계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 2025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 (국세청)

- 2025 지방세제 개편안 (행정안전부) ·

2025-9 세무회계경영저널 2025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제도

안안 세건 회조 계세 법정 인보

안세 회계법인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 건 조 세 정 보

# 안세회계법인

829-7557
829-7555

*Anse, the Best Answer*

eanse.com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 |
|---|---|
| PA 전문 | 1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 회계감사 | 2 소속회계사 125명 + 세무직원 330명 = 성실한 450명 활동 |
| 세무대리 | 3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 재무자문 | 4 2023년 매출액 711억원으로 250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 경영컨설팅 | 5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 회계기장 | 6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 창업지원 | 7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 가업승계 | 8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

##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 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세무대리·회계·기장·재무·ESG컨설팅·기업가치평가·IFRS 적용·변환 컨설팅·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Sox 서비스)·금융자문·인수합병 M&A자문·품질관리심리실·준법감시인·재경본부운영·전문지식정보운영팀·지속가능경영센터·양도증여상속팀·비영리공익팀

대표이사 박윤종·등기이사 장용석·조영우·정 훈 · 유환철 등 83명 등기이사 파트너

심리실 :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홍재권이사, 염승섭회계사 보완심리

고경호 · 고두환 · 고영일 · 권창현 · 김경수 · 김대현 · 김동옥 · 김봉수 · 김영룡 · 김옥철 · 김윤정 · 김종창 · 김준영 · 김준일 · 김태준 · 김한솔 · 김현단 · 박규태 · 박병준 · 박윤종 · 박정렬 · 박형동 · 배익권 · 백애라 · 서병욱 · 서혜빈(수습) · 송형곤 · 양승민 · 오진탁 · 유진우 · 유성식 · 윤훈기 · 이만선 · 이미지 · 이사야 · 이진수 · 이재권 · 이종량 · 이희건 · 임정훈 · 장용석 · 제갈원구 · 조민기 · 조영우 · 조완진 · 진수미 · 최영진 · 표정협 · 한상표 · 허정식 · 홍상연 · 홍희빈 · 황창연

| | | | |
|---|---|---|---|
| 서초(분실) | 070-7668-6865 강민우 · 곽영미 · 박지은 · 선지우 · 이승환 · 이현섭 · 이혜리 · 정호신 | | |
| 가산분실 | 02-6011-5517 설찬수 · 이남재 · 정 헌 | | |
| 부산북(사상) | 051-322-8321 공병진 · 윤재훈 · 이동계 | 서초명달지점 | 070-5101-1651 김용환 · 김수범 · 강용희 |
| 부산지점 | 051-819-3308 김수영 · 박지훈 · 이성태 | 강남지점 | 516-4199 윤봉진 · 장원택 · 최정화 |
| 부산중앙지점 | 051-714-7227 김치현 · 이형래 · 홍영표 | 서초방배지점 | 6245-7502 정 훈 · 김태경 · 라선희 |
| 부산센텀지점 | 051-938-9677 이대건 · 이수영 · 장시연 | 강남삼성지점 | 571-3700 정원용 · 임진호 · 안영호 |
| 대전지점 | 042-525-5558 김형진 · 이상훈 · 정대환 | 여의도지점 | 6959-2378 변남진 · 양용석 · 오유준 |
| 경인지점 | 032-815-2641 심강수 · 이희곤 · 정영훈 | 센트럴지점(용산) | 2209-0710 유환철 · 유지윤 · 윤현철 |
| 일산지점 | 031-817-4189 김종운 · 송주호 · 최민욱 | 영등포지점 | 2633-9243 차병길 · 방수혁 · 이원재 |
| 송도지점 | 032-715-5376 강우석 · 조승범 · 김성우 | 가산지점 | 2026-8838 조재형 · 허 근 · 고경환 |
| 울산지점 | 052-263-7006 배한성 · 오승혁 · 장효철 | 중기(마포) | 02-312-2255 이익재 · 이준상 · 이승호 |
| 특별자문역 |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 · 윤경만 · 박희원 · 이우목 · 이미경 경영지도사 | | |

## 안세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세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능동창업적 창조활동함.(02-829-7575)

**1. 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2.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3.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율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4.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5.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6.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7.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8.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9. M&A 실사·조사 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10. 화의·법정관리 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11. 외국 · 해외 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발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12.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상장 코스닥사 사외이사취임, 세무고문,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회계 · 세무 · 경영분야 겸직가능, 상장사 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9

+ 교육·훈련강의저널
+ CEO·CFO·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인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 9월의 세무일지

| 일 자 | 구 분 |
|---|---|
| 1(월) |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br>교육세(금융·보험업분) 신고납부,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개별소비세(유류 등),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10(수) |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br>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
| 22(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 30(화) |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br>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개별소비세(유류 등),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 이 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방법 ·····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요소 ····· 3


## 이달의 특집


✓2025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제도 (국세청) ····· 4


## 세무정보


✓2025 지방세제 개편안 (행정안전부) ····· 90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8월) ····· 144

#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방법

*- 안세재경저널 2025/8/27일자 통권 1742호*

| 개념구분 | 거주자 사망 | 비거주자 사망 |
|---|---|---|
| 1. 상속세 과세범위 | 국내·국외 소재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 납세의무) |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만 과세 (제한 납세의무) |
| 2. 과세관할(납세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
| 3. 상속세 신고기한 | 사망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9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 4. 과세가액 차감항목 | | |
| - 공과금 | - 공제가능 | - 해당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공제 |
| - 장례비 | - 공제가능 | - 공제안됨 |
| - 채무 | - 공제가능 | ① 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공제<br>②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의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채무는 공제 |
| 5. 과세표준 계산 | (상속세 과세가액) - (모든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가액) - (기초공제 2억 + 감정평가수수료) |
| ① 기초, 배우자 등,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 공제 가능 |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가능) |
| ② 가업상속, 영농상속 | 공제됨 | 공제안됨 |
| ③ 금융재산·동거주택·재해손 | 공제 가능 | 공제 안됨 |

| | | |
|---|---|---|
| 실공제 | | |
| ④ 감정평가수수료 |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 ⑤ 공제적용 한도액 | 적용 | 적용 |
| 6. 세액공제 | | |
| - 증여세액공제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공제가능 | 공제안됨 |
|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 - 신고세액공제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 - 문화유산자료등 징수유예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 7. 연부연납, 물납 | 가능 | 가능 |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요소

*- 안세재경저널 2025/8/20일자 통권 1741호*

| 개념, 구분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 핵심개념 | 회사와 종속적 고용관계하에 지휘·명령 받으면서 업무수행 | 독립적 관계로 일하며 지휘·명령 없음 |
| 업무시간 | 회사가 정한 시간에 근무, 근태관리 | 업무시간을 업무자가 결정, 시간관리 없음 |
| 업무장소 | 회사가 정한 장소에서 근무 | 업무장소를 업무자가 결정 |
| 업무방법 |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방법 | 본인이 제공하는 장비·방법 적용 |
| 성과보상 | 고정급(고정월급과 상여금) |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변동보수 |
| 계약서류 | 종속고용 근로계약서 | 위임, 도급, 용역수탁계약서 |
| 적용법률 |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 민법, 상법 |
| 손해책임 | 업무상 대외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부담 | 각자가 일으킨 문제는 개인이 민형사 등 전적인 책임 부담 |
| 4대보험 | 근로자로 분류, 직장가입자 분류 | 사업자로 분류, 지역가입자 분류 |
| 급여방법 | 매월 고정급여 + 성과상여금 가능 연봉 + 퇴직시 급여(퇴직금) | 고정급여 없고 업무건별 실적보수 퇴직시 급여나, 퇴직금 없음 |
| 원천징수 | 매월 근로소득원천징수 (대부분 근로소득만 있음) | 사업소득원천징수(3.3%) + 스스로 종합소득신고함 |

이달의 특 집

# 2025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제도

- 국세청 -

❍중소기업 요건 비교(조특법 vs 중기법)

| 구분 | | 조특법 상 중소기업 | 중기법 상 중소기업 |
|---|---|---|---|
| 중소기업요건 | 대상 | • 영리·비영리 제한 없음 | • 영리기업 및 비영리기업 중 일부*<br>* 사회적기업, 특정 조합·협동조합 등 |
| | 업종 |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제외 모든 업종<br>* 호텔업·여관업·주점업 | •모든 업종 |
| | 매출액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기준 내<br>-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기준 내<br>-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기준 |
| | | 참고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 |
| | 자산 | • 해당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 | 기업 집단기준 |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제외<br>*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
| | 독립성 (자회사) |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제외<br>* 조특법은 해당사업연도 자산총액 기준, 중기법은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기준 | |
| | 독립성 | • 관계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이 | • 관계기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

| | | | |
|---|---|---|---|
| | (관계기업) | 별표1기준 초과 시 제외 | 매출액이 별표1 기준 초과 시 제외 |
| | | 참고 관계기업 – 외감대상 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 | |
| 유예기간 | | • 사유발생 사업연도 + 다음 5개(코스닥·코스피 상장기업 7개) 사업연도<br>- 유예기간 종료 후 매 사업연도 판단<br>※ (종전) 유예기간 3년 | • 사유발생연도의 다음 3개연도<br>- 유예기간 종료 후 매년 판단 |
| 유예사유 | | • 자산총액 5천억 초과<br>• 매출액 별표1 기준 초과<br>• 독립성 위배(관계기업) | • 자산총액 5천억 초과<br>• 매출액 별표1 기준 초과<br>• 독립성 위배(자회사, 관계기업) |
| 유예제외 | |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br>•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br>• 독립성 위배(자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br>•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기준 초과 |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br>• 독립성 위배(공시대상 기업집단)<br>•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 유예기업의 제외 사유발생 후 3년 경과 |
| 기타<br>(중기령 별표1) | |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가구·전기장비·의복·펄프·1차금속 제조업 등<br>•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농·임·어업, 도소매업, 건설업,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br>• 매출액 80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의료기기 및 그 밖의 제품 제조업 등<br>• 매출액 600억원 이하 :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등<br>• 매출액 40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 | |

**o** 중소기업 요건 비교(조특법 vs 중기법)

| 구분 | | 조특법 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
|---|---|---|---|
| 중견기업요건 | 대상 | •조특법 상 중소기업 제외<br>•영리·비영리 제한 없음<br>•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 제외<br>*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호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 • 영리기업(비영리 제외)<br>•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제외<br>•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 제외 |
| | 제외업종 | •소비성서비스업<br>•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일반지주회사 제외)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일반지주회사 제외) |
| | 매출액 | • (R&D)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br>• (그 외)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 매출액 기준 별도 없음<br>-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매출액 기준 있음 |

| | | |
|---|---|---|
| | | 참고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
| | 자산 | • 자산총액 요건 별도 규정 없음 |
|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br>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br>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 유예제도 | | • 중소기업과 달리 유예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
| 기타(법인세 신고방법) | | •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준검토표 작성방법<br>- 중견기업 공제·감면이 있는 경우 – 공제·감면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br>* 다수 공제·감면이 있을 시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성<br>- 중견기업 공제·감면이 없는 경우 – 평균매출액 3천억원 기준으로 판단 |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내용 요약

❙ 기업규모별(중견·중소)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조특령 §2① · §6의4 · §9④)

| 종 전 | 개 정 |
|---|---|
| □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 제외대상<br>ㅇ 소비성서비스업<br>ㅇ 금융업(중견기업)<br>ㅇ 보험 및 연금업(중견기업)<br>ㅇ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br><추 가> | □ 제외업종 등 추가<br>ㅇ (좌 동)<br>ㅇ 부동산임대업<br>ㅇ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br>* ❶~❸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br>❶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br>❷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br>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2②)

| 종 전 | 개 정 |
|---|---|
| □ 중소기업 졸업 유예<br>ㅇ (졸업요건) 규모기준 초과<br>❶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초과<br>❷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br>❸ 관계기업과의 매출합산액 기준금액 초과<br>ㅇ (유예기간) 졸업 후 3년 | □ 졸업 유예기간 확대<br>ㅇ (좌 동)<br>ㅇ (유예기간) 3년 →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 |

→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6) ☞ 책자 31p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
<td>□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br>ㅇ (감면율) 업종·지역별 차등<br>-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 초기 3년 간 + 25%<br>-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br>(일반) 5년간 50%<br>(청년 등) 5년간 100%<br><br><신 설><br><br>- 고용증대 추가감면 : 상시근로자 증가율×50%<br>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기본 감면</th><th rowspan="2">추가감면</th></tr>
<tr><th>수도권 과밀억제 권역</th><th>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th></tr>
<tr><td>창업중소 기업</td><td>-</td><td>5년 50% (신성장서 비스우대)</td><td rowspan="3">상시 근로자 증가율 ×50%</td></tr>
<tr><td>청년· 생계형</td><td>5년 50%</td><td>5년 100%</td></tr>
<tr><td>벤처기업 등</td><td colspan="2">5년 50%(신성장서비스 우대)</td></tr>
</table>
<br><신 설></td>
<td>□ 감면율 정비 등 제도 합리화<br>- 적용기한 종료<br>- 수도권* 밖 :<br>ㅇ (좌 동)<br>*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br>-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br>(일반) 5년간 50% → 25%<br>(청년 등) 5년간 100% → 75%<br>- 고용증대 추가감면 : 상시근로자 증가율×100%<br>
<table>
<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3">기본 감면</th><th rowspan="3">추가 감면</th></tr>
<tr><th rowspan="2">수도권 과밀억제 권역</th><th colspan="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th></tr>
<tr><th>수도권</th><th>수도권 밖*</th></tr>
<tr><td>창업중소 기업</td><td>-</td><td>5년 25%</td><td>5년 50%</td><td rowspan="3">상시 근로자 증가율 ×100%</td></tr>
<tr><td>청년· 생계형</td><td>5년 50%</td><td>5년 75%</td><td>5년 100%</td></tr>
<tr><td>벤처기업 등</td><td colspan="3">5년 50%</td></tr>
</table>
<br>*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br>ㅇ (감면한도) 연간 5억원</td>
</tr>
</table>

→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졸업 후 점감구조 도입(조특령 §24①)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통합투자세액공제<br>ㅇ (공제율)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1]</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15</td><td>25</td><td>4</td></tr>
</table>
1」(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td><td>□ 점감구조 도입<br>ㅇ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1]</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 7.5[2]</td><td>10</td><td>10</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6, 9[3]</td><td>12</td><td></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15</td><td>15, 20[4]</td><td>25</td><td></td></tr>
</table>
1」(좌 동)<br>2」(~3년)7.5%, (4년~)5%<br>3」(~3년)9%, (4년~)6%<br>4」(~3년)20%, (4년~)15%</td></tr>
</table>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추가(조특령 §26의8) ☞ 책자 67p

| 종 전 | 개 정 |
|---|---|
|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br><br>ㅇ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br><추 가> | □ 북한이탈주민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에 추가<br>ㅇ (좌 동)<br><br>ㅇ 북한이탈주민* 근로자<br>*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만 |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내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조특법 §63, 조특령 §60) ☞ 책자 73p

| 종 전 | 개 정 |
|---|---|
|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 □ 이전지역 범위 합리화 |

| | |
|---|---|
| ㅇ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 ㅇ (좌 동) |
| ㅇ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br>-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 5년 100%+2년 50% :<br>* 중소기업이 공장·본사 모두 이전하는 경우 한정 | ㅇ (좌 동)<br>-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5년 100%+2년 50% :<br>* 중소기업이 공장·본사 모두 이전하는 경우 한정 |
| - 지방광역시, 수도권 연접지역, 대도시(인구 30만 이상 ): 5년 100% + 2년 50%<br>-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 : 7년 100% + 3년 50%<br>*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br>- 그 외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 ㅇ (좌 동) |

→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제1장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

우리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 여건을 개선하여 역동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1. 개 요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1) 업종기준 2) 규모기준 3) 독립성기준 4) 기업집단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5) 졸업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ㅇ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중소기업 범위는 조특법 §6 및 같은 법 시행령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특법 전반에 적용(조문별 업종기준은 차이가 있음)되며 법인세법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

◉ 세법 상 중소기업의 요건(아래 ①, ②, ③, ④, ⑤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조특령 §2)

① 업종기준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제외

② 규모 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③ 기업집단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 독립성 기준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졸업기준 : 위 ①, ②, ③, ④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 2. 업종기준(조특령 §2①4호)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조③) 소비성서비스업<br>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br>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br>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br><br>•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1~3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br>1.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br>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br>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❶부동산임대업, ❷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

◉ 업종의 분류기준

-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조특법 §2③)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합니다(조특법 §2③단서)

◉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조특칙 §4의2)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제조업으로 봅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②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③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제조)가 외국소재 기업인 경우 무역업(도매업)에 해당합니다.

◉ 겸업법인의 주업판정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별로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영 §2③)

- 사업수입금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며,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조특칙 §2④).

## 3. 규모기준(조특령 §2①1호)

◉ 매출액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평균매출액 등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 매출액의 정의

◦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조특칙 §2④).

  * 연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단서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에게만 적용되고 분할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인사업자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법인세과-208, '11.3.23.).
-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계상되었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된 매출액을 말합니다.

◦ 인적분할시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 수 개의 공장을 운영하던 법인이 100% 자회사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일부의 공장을 인적분할한 경우 중소기업 판정시 매출액은 분할등기일 이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법인-3034, '08.10.23).

◦ 2이상의 사업 영위 시 매출액

-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범위 기준(조특령§2①각 호)은 당해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조특통 5-2...1).
-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서면2팀-1170, '06.06.2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기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6. 가구 제조업 | C32 |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 8. 광업 | B |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 22. 수도업 | E36 | |
| 23. 건설업 | F |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 33. 정보통신업 | J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N76 제외) |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 | | |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 42. 부동산업 | L | |
| 43. 임대업 | N76 |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4. 기업집단 및 독립성 기준(조특령 §2①3호)

◉ 업종과 규모기준 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합니다.('09.1.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간접소유분 포함하여 계산)
  * '09.2.4.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 제외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2020.6.9)
   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조특법 상 중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 규정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업종별로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 "관계기업"이란 「중소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지배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며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중기령 §2, 3호)
-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함(중기령 §3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조특칙 §2⑧)
  *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시 주식소유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유의
-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은 「중소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본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로 최다출자자를 각각 판단하므로 다수의 지배기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종속관계로 보지 아니함(중기령 §3의2③)

◦ 앞에서 설명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관계기업제도 차이

| 구 분 |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기본법 |
|---|---|---|
| 시행시기 | '12.1.1. | '11.1.1. |
| 중소기업 초과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기준 | |
| 매출액의 판단시점 | 해당 과세연도말 | 직전 과세연도말 |
| 지배종속관계 판단시점 | 해당 과세연도말 | 직전 과세연도말 |

## 5. 졸업기준(조특령 §2①단서)

◉ 업종기준, 매출액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합니다(조특칙 §2⑤).

## 6. 규모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조특령 §2②)

◉ 중소기업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정 유예기간 내에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합니다.

-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관계기업과의 매출 합산액 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 중소기업 유예기간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7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조특령 §2②).
  * '24.11.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그 전은 유예기간 3년 적용)
- 유예기간은 법인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중소기업 유예의 배제

- 아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령 §2② 단서)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③ 실질적 독립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 규정에 의한 경우는 가능)
  ④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영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외의 기업 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기본통칙 5-2...2).

## 7. 「중소기업기본법」개정에 따른 유예기간(조특령 §2⑤)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 유예기간 내에는 중소

기업으로 간주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매출액 기준) 및 별표2(관계기업의 평균 매출액 등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 제2장 사업단계별 세제지원 내용

| | |
|---|---|
| 창업단계 | •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최대 100%) 감면<br>•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 75% 감면<br>• 창업 후 3년간 재산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br>• 60세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저율과세(10%) |
|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 • 통합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12)%, 12(14)%, 25%)<br>* '21년부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재편<br>•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한 금액의 10%(30%, 70%, 100%) 소득공제 |
| 사업단계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br>•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br>•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공제감면<br>•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추가 인정<br>• 중소기업 최저한세 우대적용 |
|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br>•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br>•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br>•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br>•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 Ⅰ. 창업단계 지원내용

### 1. 개 요

<table>
<tr><th>구 분</th><th>지 원 내 용</th></tr>
<tr><td>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특법 §6)</td><td>• 중소기업 등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감면(상시근로자 증가시 최대 50% 추가감면 ⇨ 최대 100% 감면)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기본감면</th><th rowspan="2">추가감면</th></tr>
<tr><th>수도권과밀억제권역</th><th>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th></tr>
<tr><td colspan="2">창업 중소기업</td><td>-</td><td>5년 50%</td><td>상시근로자 증가율×100%</td></tr>
<tr><td>청년 · 생계형</td><td>5년 50%</td><td>5년 100%</td><td></td></tr>
<tr><td colspan="2">벤처기업 등</td><td colspan="2">5년 50%</td><td></td></tr>
</table>
* ’24.12.31.이전 창업분은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적용</td></tr>
</table>

| | |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99의9) | • ’25.12.31.까지 고용·산업 위기지역 내에서 감면대상사업으로 창업하는 경우(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지특법§58의3①②) |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br>- 창업 후 4년(청년창업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br>-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의5) | •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5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br>-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초과액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 시 정산 |

##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 감면대상 : ①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 ③ 창업벤처중소기업, 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감면금액 : 창업 후 5년 간 법인세(소득세)의 50%~100% 감면

*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감면한도 연간 5억원을 적용하고, 상시근로자 증가 시 증가율의 최대 100% 추가 감면(’24.12.31.이전 창업분은 상시근로자 증가율의 50%)

* ’25.12.31.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22.1.1.이전 창업은 4,800만원)인 기업의 경우 감면기간 중 100% 감면

### 2-1. 개 요

◦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86.5.12. 제정·시행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창업초기 단계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창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86. 12.2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27.12.31.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과 창업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및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서
  - 창업일, 확인받은 날 또는 해당되는 날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합니다.
-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감면기간 중 수입금액이 8,000만원(2022.1.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 청년창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 차감)
  법인으로 창업 시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어야 함(조특령 §5①)

## 2-2. 감면대상

◉ 감면대상 기업

① '27.12.31. 이전(이하 같음)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거주자와 내국법인)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

- 과세연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확인 받지 않는 내국인은 제외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감면 배제

-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합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아래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나. 이용 및 미용업('18.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서면2팀-610, '05.4.29)
-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감면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창업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서면-2022-법인-1043, 2022.3.16.).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목적사업에 건설업과 창업중소기업 제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으나, 창업 이후 창업중소기업 대상업종인 건설업 외의 타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조심2014지1160, '14.10.20)

◦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2021-법인-7074, 2021.12.09.).

◉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통칙 6-0…1)

* 감면대상 기업 중 23쪽의 ②, ③, ④의 중소기업은 지역구분하지 않으며 '18.5.29. 조특법 개정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 8,000만원('22.1.1. 이전 개시 사업연도 4,8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도 5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17.6.20. 개정>

| 과밀억제권역 | | |
|---|---|---|
| • 서울특별시 | | |
|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 |
| • 의정부시 | | |
| • 구리시 | | |
|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 |
| • 하남시 | • 고양시 | • 수원시 |
| • 성남시 | • 안양시 | • 부천시 |

| |
|---|
|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br>• 군포시<br>•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 **성장관리권역** |
|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br>•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br>•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br>•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성복동 등 25개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br>•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br>•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대천동 등 33개등,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br>•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
| **자연보전권역** |
| • 이천시<br>•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br>•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br>•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br>• 광주시<br>•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

### 2-3. 창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에 대한 명문상 정의가 없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입니다. (다만,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로 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법 §6⑩)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
-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네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자산인수비율의 계산방법(30% 이하 요건)

$$\frac{\text{인수·매입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의 합계}}{\text{사업개시 당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 \leq 30\%$$

- 인수·매입자산과 사업개시 당시 보유자산의 범위는 양자 모두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건설중인자산과 비업무용자산은 제외합니다.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종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서면2팀-742, '05.5.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 창업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 병역이행시 해당기간(최장 6년)을 빼고 연령 계산
2. 법인사업자로 창업: 해당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2-4.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민간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설, 인력, 사업계획 등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2-5.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3년 이내  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조특법 §6②)

◦ 세액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②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가 당해사업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 기준비율(수입금액의 5%)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영 §5⑤)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별도로 「조특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출요건(수입금액의 5%)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도 재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일(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우수 평가기업을 말하며
-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벤처기업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삭제 <2020.2.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 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요건(법 §6④ 및 영 §5⑪)

◦ 세액감면대상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고효율제품 등 아래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기 전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7. 감면세액

◉ 감면기간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지정사업자

-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5년간]

◦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5년간]

* 사업개시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기간

◦ 창업벤처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6 ②).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기 전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6 ④).

◉ 감면세액의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율}(50\sim100\%)$$

◦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 가산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

◦ 감면소득은 감면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법인세과-4046, '08.12.17)

-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합니다.

$$\text{감면소득} = \text{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times \frac{\text{고효율제품의 매출액}}{\text{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은 제조업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 구분 | 2025.12.31. 이전 창업 | | 2026.1.1. 이후 창업 | |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 | | 수도권 외[3] | 수도권 | |
| 창업중소 | 5년 50%[1] | - | 5년 50% | 5년 25% | - |
| 청년·생계형[2] | 5년 100% | 5년 50% | 5년 100% | 5년 75% | 5년 50% |
| 벤처기업 등 | 5년 50%[1] | | 5년 50% | | |

1) '24.12.31.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청년·생계형 창업제외), 창업벤처 및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이 신성장서비스업(조특령§27의4⑤)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가능('18.1.1. 이후 창업·확인·지정받은 경우)

2)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감면 적용('22.1.1.이전 창업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3)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조특법 §6⑦)

◦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25%) 추가감면

$$\text{추가 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작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text{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text{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한도(기본공제율 75%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25% 한도)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인 과세연도부터 적용

- 제조업·광업·건설업·물류산업 : 10명, 기타 업종 : 5명

* 추가감면 적용 첫 해는 최소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용증가율 계산

◉ 세액감면 한도(조특법 §6⑬)

◦ '25.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감면받는 세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 감면세액의 승계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규정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는

- 통합 후 존속법인이나 설립법인 또는 전환법인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남은 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 §31④, §32④)

◉ 감면세액의 신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면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2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27)

◦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의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8의3)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3의2)
- 통합투자세액공제(§24)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5의6)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의7)(§6⑦에 따른 추가감면 적용시)
-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104의14)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104의15)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04의22)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104의25)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122의4①)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126의7⑧)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합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12의2)
-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31④,⑤)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32④)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62④)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①)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63의2①)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4)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85의6①,②)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9②)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11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24①)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8)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9②)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17②)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0②)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1②)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2②)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33②)

◦ ’2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조특법 §6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조특법 §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조특법 §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127④단서).

* ’24.12.31.과세연도 까지는 조특법 §6⑦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을 받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 기타 조세특례의 제한

◦ 무신고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결정,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128).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조특법 §144).

* 청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수입금액 8,000만원(’22.1.1. 이전 4,800만원) 이하로 100% 감면받는 경우와 고용증가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조특법 §132①).

# Ⅱ.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지원내용

## 1. 개 요

<table>
<tr><th>구 분</th><th>지 원 내 용</th></tr>
<tr><td>연구개발 관련<br>출연금 등의<br>과세특례<br>(조특법 §10의2)</td><td>•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br>- 당해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td></tr>
<tr><td>통합투자세액공제<br>(조특법 §24)</td><td>• (공제율) 기본공제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10%]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기본(%)</th><th rowspan="2">추가<br>(%)</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7)</td><td>10(12)</td><td>10</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6(8)</td><td>12(14)</td><td></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15</td><td>15</td><td>25</td><td></td></tr>
<tr><td>반도체 기술*</td><td>20</td><td>20</td><td>30</td><td></td></tr>
</table>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기술 5% p 상향('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br>※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25.1.1.이후 최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세율이며, '23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td></tr>
<tr><td>영상컨텐츠<br>제작비용 세액공제<br>(조특법 §25의6)</td><td>• 텔레비전·영화관에서 상영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영화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br>- '24.1.1.이후 발생한 제작비용의 15%(일반 5%, 중견 10%) 세액공제<br>- 일정요건 충족 시 국내 발생한 제작비용의 15%(중소 외 10%) 추가공제<br>* '24.1.1.전 발생하는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10%(일반 3%, 중견 7%) 세액공제</td></tr>
<tr><td>벤처투자조합 출자<br>등에 대한 소득공제<br>(조특법 §16)</td><td>• '25.12.31.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의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 시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td></tr>
<tr><td>벤처투자조합 출자<br>등에 대한 소득공제<br>(조특법 §16)</td><td>• '25.12.31.까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벤처기업(창업 후 3년,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법 모집기업 7년 중소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br>* 투자금액의 10%(경우에 따라 30%, 70%, 100%) 소득공제</td></tr>
</table>

## 2.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 2-1. 개 요

◦ 기업투자 할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5),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4),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25의5) 등

◦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2-2. 공제대상

◉ 공제대상 사업자 및 업종

◦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공제대상이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조특법시행령 §29③)은 제외합니다.

◉ 공제대상 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기타 유형·무형자산

① 토지, 건물·구축물,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조특칙 【별표1】에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규정

② 건물, 구축물, 차량 등(조특칙 【별표1】)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자산

-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지식재산권*(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 등록한 것

### 2-3. 공제금액의 계산

◉ 공제금액

◦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 기본 공제율

◦ 추가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직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 추가 공제율

* 추가공제 한도 : 기본공제 금액의 2배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 구 분 | 기본(%) | | | 추가 (%) |
|---|---|---|---|---|
| | 대 | 중견 | 중소 | |
| 일 반 | 1 | 5(7) | 10(12) | 10 |
| 신성장·원천기술 | 3 | 6(8) | 12(14) | |
| 국가전략기술 | 15 | 15 | 25 | |
| 반도체 기술* | 20 | 20 | 30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 ('25.1.1.이후 최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세율이며, '23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1)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25.1.1. 이후 최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부터)
   - 일반 : (~3년)7.5%, (4년~)5% / 신성장 : (~3년)9%, (4년~)6% / 국가전략 : (~3년)20%, (4년~)15%

2) 국가전략 기술 중 반도체 기술에 대한 공제율 5% p 상향('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Max(①, ②) - (③ + ④)]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총공사 예정비

②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해당 과세연도 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④ 해당 과세연도 전 투자분으로서 ③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해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3}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 제외

◉ 공제세액의 신청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제 후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부터 2년(공제대상 건물과 구축물은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자산을 처분(임대포함)한 경우 세액 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조특법§146).

◉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27)

- 동일한 과세연도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8의3),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6)와의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합니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7)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12의2)
•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31④,⑤)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32④)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62④)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①)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63의2①)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4)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6)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7)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8)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85의6①,②)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9②)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11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24①)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8)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9②)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17②)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0②)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1②)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2②)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33②)

◉ 기타 조세특례의 제한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하여 공제합니다(조특법 §132, §144).

# Ⅲ. 사업단계 지원내용

## 1. 개요

### 1-1. 발생소득·비용 등에 대한 지원

<table>
<tr><th>구 분</th><th>지 원 내 용</th></tr>
<tr><td>중소기업에 대한<br>특별세액감면<br>(조특법 §7)</td><td>• 다음의 구분에 의해 소득세·법인세의 5~30% 감면
<table>
<tr><th colspan="2">업종</th><th>감면율</th></tr>
<tr><td rowspan="5">소기업</td><td>도·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td><td>10%</td></tr>
<tr><td>수도권 안 통관대리업 등</td><td>10%</td></tr>
<tr><td>수도권 안의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td><td>20%</td></tr>
<tr><td>수도권 밖 통관대리업 등</td><td>15%</td></tr>
<tr><td>수도권 외의 지역 ‘도매업 등’ 제외한 감면업종</td><td>30%</td></tr>
<tr><td rowspan="4">중기업</td><td>수도권 밖 도매업 등</td><td>5%</td></tr>
<tr><td>수도권 밖 통관대리업 등</td><td>7.5%</td></tr>
<tr><td>수도권 내 출판업</td><td>10%</td></tr>
<tr><td>수도권 밖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업종</td><td>15%</td></tr>
</table>
• 한도 : 1억원(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시 그 한도를 1억원에서 감소인원 1명당 5백만원 차감)<br>
* ’23.1.1. 이후 수도권 안 중기업의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감면특례 폐지</td></tr>
<tr><td></td><td>• 알뜰주유소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22.1.1. - ’23.12.31.까지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에서 10~20% 감면
<table>
<tr><th colspan="2">업 종</th><th>감면율</th></tr>
<tr><td>소기업</td><td>알뜰주유소</td><td>20%</td></tr>
<tr><td rowspan="2">중기업</td><td>수도권 밖 알뜰주유소</td><td>15%</td></tr>
<tr><td>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석유판매업</td><td>10%</td></tr>
</table>
* ’23.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td></tr>
<tr><td>연구·인력개발비<br>세액공제<br>(조특법 §10)</td><td>•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br>
• 세액공제액 = (1) + (2) + (3)<br>
(1) 신성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br>
* 30% +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br>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50%<br>
* 40% +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br>
(3) 일반연구개발비 : max(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br>
①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br>
②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5%<br>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 14대 분야 273개 기술(조특령 별표7)<br>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7개 분야 71개 기술(조특령 별표7의2)</td></tr>
<tr><td>기술이전 및<br>기술취득 등에<br>대한 과세특례<br>(조특법 §12)</td><td>• 특허권 등을 이전·취득·대여하는 경우<br>
-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br>
-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18.12.31 일몰종료)<br>
- 대여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25%를 감면</td></tr>
</table>

| | |
|---|---|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3의3) |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br>-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br>•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사업·자산 인수 시<br>- 인수금액의 10%(일반 5%, 중견 7%) 세액공제 |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조특법 §18) (조특령 §16) |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거나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기술자<br>* 이공계 등 학사이상 학위자로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이상 근무한 연구원<br>-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26.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br>-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22.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 감면,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조특법§8의4) (소법§85의2) (법법 §72) | •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액 한도액 내에서 환급 |
|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85의6) | •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경우 해당사업에서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그 후 2년은 법인세(소득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50% 세액감면<br>•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
| 최저한세 우대적용 (조특법 §132①) | •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고 세금납부<br>- 중소기업 7%(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br>- 일반기업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br>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 이하 12%<br>과세표준 1,000억 초과 17% |

## 1-2. 고용창출·유지 등에 대한 지원

<table>
<tr><th>구 분</th><th>지 원 내 용</th></tr>
<tr><td>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br>(조특법 §19)</td><td>•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br>[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 10%**]<br>*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br>** 2024.12.31. 이전 지급한 경영성과급 공제율 15% 적용<br>➜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적용 배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중복적용 배제<br>•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br>[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 50%]<br>*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제외</td></tr>
<tr><td>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br>(조특법 §29의4)</td><td>• 직전 3년 임금증가율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20%(중견기업 10%)<br>* ’25.12.31.까지 적용 가능<br>•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 × 20%(중견기업 10%)<br>•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받은 상당액 추가납부<br>*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적용<br>** ’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대기업 제외, ’25.12.31.까지 적용 가능</td></tr>
<tr><td>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br>(조특법 §29의7)</td><td>• 기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br>(만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중소(3년간)</th><th colspan="2">중견(3년간)</th><th colspan="2">일반기업(2년간)</th></tr>
<tr><th>수도권</th><th>수도권밖</th><th>수도권</th><th>수도권밖</th><th>수도권</th><th>수도권밖</th></tr>
<tr><td>청년 등</td><td>1,100</td><td>1,200</td><td>800</td><td>800</td><td>400</td><td>400</td></tr>
<tr><td>청년 등 외</td><td>700</td><td>770</td><td colspan="2">450</td><td colspan="2">-</td></tr>
</table>
* ’24.12.31.까지 적용 가능<br>•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전체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상당액 추가납부</td></tr>
<tr><td></td><td>•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br>(만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중소(3년간)</th><th rowspan="2">중견<br>(3년간)</th><th rowspan="2">일반<br>(2년간)</th></tr>
<tr><th>수도권</th><th>수도권밖</th></tr>
<tr><td>기본</td><td>청년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
<tr><td></td><td>청년등 외</td><td>850</td><td>950</td><td>450</td><td>-</td></tr>
<tr><td>추가</td><td>정규직전환·<br>육휴복귀자</td><td colspan="2">1,300</td><td>900</td><td>-</td></tr>
</table></td></tr>
</table>

| | |
|---|---|
| 통합고용세액공제<br>(조특법 §29의8) | * 청년 등 범위에 경력단절 여성포함 및 청년 연령 15-34세로 확대<br>** '25.12.31까지 적용<br>•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 전환일, 육아휴직 복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상당액 추가납부 |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br>(조특법 §30의3) |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br>-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br>-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 15%) 세액공제<br>* '26.12.31까지 적용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br>(조특법 §30의4) |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하여<br>-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이하 "청년 등") 순증인원 사회보험료의 100%<br>-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순증인원 사회보험료의 50%세액공제<br>•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상당액 추가납부<br>* '24.12.31까지 적용 |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과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를 선택하여 적용가능(중복적용 불가)

### 1-3. 중소기업 지방이전 등 지원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br>(조특법 §60) | •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br>-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법인세 과세특례<br>(조특법 §61)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2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br>-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

| | |
|---|---|
|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3, 조특법 §63의2)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가동 후 공장을 이전하여 '2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다만, 10년 이내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br>①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 5년 100% + 2년 50%<br>*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br>②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대도시(인구 30만이상) : 5년 100% + 2년 50%<br>③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성장촉진지역 등* : 7년 100% + 3년 50%<br>* 성장촉진진역, 위기지역, 인구감소지역<br>④ ①,②,③ 외 지역 : 7년 100% + 3년 50%(①,②,③ 외 지역 중 성장촉진지역 등은 10년 100% + 2년 50%)<br>※ '24.12.31.까지 기존 공장을 철거·폐쇄하는 등 '25.1.1.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25년 개정 전 종전 규정을 적용 |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4) | • '25.12.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과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br>- 감면사업 소득에 대하여 5년간 50%를 감면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의7) |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br>-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의8) | •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br>-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5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121의17)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25.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 등<br>-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 1-4. 기타 조세지원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세법 §25④) | • 중소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범위액<br>- 3,6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률<br>* 일반기업 1,200만원 |
| 중소기업 대손금 특례규정 (법인세법시행령 §19의2①) | • 중소기업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도 대손처리 가능<br>* 일반법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에만 대손처리 가능<br>•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처리 가능 |
| 해외현지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19) | •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br>*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로 한정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96의3) | •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br>- '20.1.1.~ '25.12.31.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특례 (소득세법 §128②) | • 직전 과세기간의 1월~12월까지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자는<br>-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가능 |
|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 (법인세법 §64②) |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일정기한 이내*에 분납가능<br>* 중소기업 2개월, 일반기업 1개월 |
| 전통주 제조업체 세율경감 (주세법 §8③) | • 직전 연도 출고실적 500㎘(증류주 250㎘) 이하 전통주 제조자에 대해 주세율 50% 경감 |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

• 감면대상 :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비율 × 업종별·지역별 감면율*
  * 수도권 밖 소기업 10%~30%, 수도권 내 소기업 10%~20%, 수도권 밖 중기업 5%~15%

### 2-1. 개 요

◦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에서 5~3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창업단계에서 일정한 기간(5년) 동안 감면(기간 감면)하는 것과 달리 사업(영업)단계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감면해 주는 제도
◦ '92년 당시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제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92년 신설당시 제조업종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이 적용되었다가 수차례 연장 및 업종추가 등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 48개 업종으로 확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규정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 중기업과 소기업별, 수도권 내의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 구분별, 도매업 등·지식기반산업·기타 제조업 등 업종별로 구분하고 5~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조특법 §7).
◦ 중소기업으로서 접근성이 높아 조세혜택을 받기 용이하지만 중복지원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다른 공제·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2-2. 감면대상

◉ 감면대상
  ◦ 내국인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는 다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알뜰주유소 석유판매업 소득은 '2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

◉ 소기업의 범위
  ◦ 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이 붙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

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영 §6⑤)

* 다만, 2016.1.1. 현재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봅니다.(영 부칙 제22조)

- 중기업은 위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증가로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같은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재조예-843, '04.12.21.)
-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기준으로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집행기준 7-0-4).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 2. 음료 제조업 | C11 |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 17. 수도업 | E36 |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 19. 광업 | B |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 | |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 29. 건설업 | F |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33. 정보통신업 | J |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5. 부동산업 | L | |
|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비 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감면 적용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함(영 §6①)
23.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2 :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험운전・평가・검사·안정성 검토, 관리·매뉴얼 작성·자문・지도·유지·보수,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같은 법 시행령 §2)을 말함
    *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은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
24. 물류산업
    * 육상·수상·항공 운수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조특령 §5⑦)
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자

동차 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사업장(영 §54①) [자동차부분정비업과 원동기 전문 정비업은 해당되지 않음]

27.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 [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을 말함
2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2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일자리지원기관
3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함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
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원훈련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
43. 「민간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 관리업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등록한 자동차 중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 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

로 해당 사업이 주업이 아니더라도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0184, 2002. 01.31)

## 2-3. 감면율

◉ 규모별·지역별·업종별 감면율

| 기업규모 | 사업장 소재지 | 감면업종 | 감면율 |
|---|---|---|---|
| 소기업 | 수도권내 | 제조업 등 | 20% |
| | | 도·소매, 의료업 | 10% |
| |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10% |
| | 수도권외 | 제조업 등 | 30% |
| | | 도·소매, 의료업 | 10% |
| |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15% |
| | 알뜰주유소 | | 20% |
| 중기업 | 수도권내 | 알뜰주유소 | 10% |
| | 수도권외 | 제조업 등 | 15% |
| | | 알뜰중슈ㅗ | 15% |
| | | 도·소매, 의료업 | 5% |
| |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7.5% |

◦ 수도권 내보다 수도권 외의 지역, 중기업보다 소기업, 그리고 도매업 등 현금수입업종에 비해 제조업 등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 ’23.1.1. 이후 수도권 내 중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였으나,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출판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 중기업은 10%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사업장단위 감면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조특법 §7① 본문),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조특법 §7① 단서).

- 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의 경우 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면, 지방에 있는 사업장(공장)도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예외적 기업단위 감면방식).

| 본점 소재지 | 감면방식 | 감면율 적용 |
|---|---|---|
| 수도권 본점, 지방공장 | 기업단위 감면 | 전부 수도권 감면율 적용 |
| 지방본점, 수도권 공장 | 사업장단위 감면 | 공장만 수도권 감면율 적용 |

◉ 수도권의 범위

◦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합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전체(제외지역 없음)

## 2-4. 감면세액의 계산

◉ 감면세액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율}(5\sim30\%)$$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 감면적용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감면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도래기한(현재 '25.12.31.)까지 감면 적용

◦ 법인세 산출세액은「법인세법」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의한 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 가산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합니다.

◦ 감면소득은 해당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13조【구분경리】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입니다.

◉ 감면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백만원)

* 위 산식 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함

◦ 그 밖의 경우 : 1억 원

◉ 감면세액의 신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면제)신청서(조특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복적용 배제(조특법§127)

◦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의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법 §127④)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8의3)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3의2)
- 통합투자세액공제(§24)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5의6)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04의14)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104의15)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04의22)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104의25)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122의4①)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126의7⑧)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12의2)
-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31④,⑤)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합니다(조특법 §127⑤).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32④)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62④)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①)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63의2①)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4)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85의6①,②)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9②)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11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24①)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8)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121의9②)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17②)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0②)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1②)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2②)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33②)

◉ 기타 조세특례의 제한

◦ 무신고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결정,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128).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조특법 §132, §144).

## 3.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조의8)

| |
|---|
| • 공제대상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자(소비성 서비스업 제외)<br>• 공제금액 :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항목별 1인당 공제금액 |

### 3-1. 개요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5개의 고용지원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하면서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청년 연령 범위를 15 ~ 29세 → 15 ~ 34세로 현실화하였습니다.

* 고용증대·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3-2. 공제대상 및 공제세액

◉ 공제대상 납세자

◦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 공제대상이나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 §29③)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합니다.

◦ '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그 다음 1년(중소·중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세액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에 아래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청년[1]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자[2], 북한이탈주민[3] 근로자 등(이하 "청년 등")

– 중소기업 1,450만원(수도권 밖 중소기업 1,55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일반기업 400만원

1)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자는 현재 연령에서 6년을 한도로 병역 이행 기간을 차감한 연령)
2) 경력단절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25.1.1. 이후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신청하는 분부터)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25.1.1. 이후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①에 해당하는 청년 등 이외의 상시근로자

– 중소기업 850만원(수도권 밖 중소기업 95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

③ '23.6.30. 기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1), 파견근로자2)로 고용된 자 중 '24.1.1.~'24.12.31.기간 중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인원

–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불가

④ '25.12.31.까지 육아휴직 복귀자

-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인원 1인 당 공제금액 |**

| 구분 | | 중소(3년간) | | 중견(3년간) | 일반(2년간) |
|---|---|---|---|---|---|
|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 기본 | 청년 등 |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 | 청년 등 외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 |
| 추가 | 정규직전환·육휴복귀자 | 1,300만원 | 900만원 | - | |

◉ 상시근로자

◦ 공제 가능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②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공제세액의 신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면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제 후 사후관리

-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29의8②).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29의8⑥).

◉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27)

- 동일한 과세연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의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과의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

◉ 기타 조세특례의 제한

- 추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128).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조특법 §132, §144).

## 4.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3)

- 감면대상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
- 감면금액 :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최대 10년)간 100%, 이후 2년(최대 3년)은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

### 4-1. 개요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내국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4-2. 감면대상 및 감면기간

◉ 감면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장을 이전하여 '2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내국인이 공

제대상입니다(조특법 §63①).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소급하여 10년 내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

②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

* '24.12.31.까지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신축이전인 경우는 3년 내 개시)

③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본사와 공장시설이 모두 이전할 것

④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 이전 전의 공장에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조특법 §63⑦).

◉ 감면기간 및 감면율

◦ 이전 지역에 따라 감면기간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조특법 §63①).

①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중소기업에 한함) :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24.12.31.이전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광역시, 대도시(인구30만 이상)로 이전 : 5년 100% + 2년 50%

* 1.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이전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함)

③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 : 7년 100% + 3년 50%

* 성장촉진지역, 위기지역, 인구감소지역

④ ①,②,③ 외 지역으로 이전 : 7년 100% + 3년 50%

⑤ ①,②,③ 외 지역 중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 : 10년 100% + 2년 50%

◦ '24.12.31.까지 기존 공장을 철거·폐쇄하는 등 '25.1.1.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25년 개정 전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감면세액의 신청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

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조특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면 후 사후관리

◦ 감면 적용 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 §63②).

-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해산한 경우(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폐업은 제외)
-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수도권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63⑧).

◉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27④)

◦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의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8의3)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3의2)
- 통합투자세액공제(§24)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5의6)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04의14)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104의15)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04의22)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104의25)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122의4①)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126의7⑧)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아래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합니다.

- 창업중소 등에 대한 세액감면(§6)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12의2)
-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31④,⑤)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32④)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62④)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63의2①)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4)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85의6①,②)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9②)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11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24①)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8)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9②)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17②)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0②)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1②)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2②)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33②)

◉ 기타 조세특례의 제한

◦ 무신고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결정,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128).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하여 감면받는 기업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조특법 §132, §144).

## 5.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의3)

### 5-1. 개요

●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으로부터 ’20.1.1. ~ ’25.12.31.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5-2.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

◉ 임대인 요건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①에 따른 상가건물

에 대해 「부가가치세법」등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임차인(임차소상공인)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임대상가건물을 20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다.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조특법 시행령」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전대인은 부동산입대업자에 해당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상기 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1월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5-3. 공제금액 등

◉ 공제금액
-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20년 인하분은 50%,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70%의 공제율을 적용(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0%의 공제율을 적용)

◉ 제출서류
-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diz.or.kr/cose/main.do)

◉ 공제제외
-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 또는 보증금를 기존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예 : '24년 인하분 → '25.6.30.까지) 기존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세액공제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 무신고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결정,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경우
-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만 해당),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 기타사항
- ◦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
-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이월공제

## Ⅳ.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31, 지특법 §57의2③) | • 통합 신설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해 이월과세(실제 처분시까지 과세유예)<br>•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개발촉진지구 등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으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 통합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승계하여 적용<br>•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해 통합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함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 §32, 지특법 §57의2④) | •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br>-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br>• 법인전환에 따른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75% 경감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34) | •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에 한함)에 따라 '26.12.31. 이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br>-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 상당액에 대해 4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br>❶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종료일이 3개월 이전이면 3개월이 되는 날)<br>❷ 그 외 : 자산 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 | |
|---|---|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과세특례 (조특법 §44) | •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법인 등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br>-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4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46의2) | • 주식회사인 제휴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제휴법인의 주식을 '09.12.31. 이전에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고<br>-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당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 제3장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 1.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요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등이 있습니다.

## 2.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란 상속공제 종류 중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공제의 종류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1)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금액 (300억원~600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가업상속재산이란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 상증법상 주식평가액×[1-(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 사업무관 자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① 법인세법 §55조의2(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② 법인세법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법인세법시행령 §61조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과다보유현금 제외)

2) 가업상속공제의 확대 내용

| 상속개시일 | 공제대상 | 가업상속공제액 | 공제 한도액 |
|---|---|---|---|
| ’07.12.31. 이전 | 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 가업상속재산가액 | 1억원 |
| ’08.1.1.~12.31. |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br>① 가업상속재산의 20%<br>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 30억원 |
| ’09.1.1.~<br>’10.12.31.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br>① 가업상속재산의 40%<br>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 가업 영위기간 별<br>•10년이상 : 60억원<br>•15년이상 : 80억원<br>•20년이상 : 100억원 |
| ’11.1.1. 이후 |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1천5백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12.1.1. 이후 | 위와 같음 |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br>① 가업상속재산의 70%<br>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 가업 영위기간 별<br>•10년이상 : 100억원<br>•15년이상 : 150억원<br>•20년이상 : 300억원 |
| ’13.1.1. 이후 |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2천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 | | |
|---|---|---|---|
| '14.1.1. 이후 |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3천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 가업상속재산가액 | 가업 영위기간 별<br>•10년이상 : 200억원<br>•15년이상 : 300억원<br>•20년이상 : 500억원 |
| 16.1.1. 이후 | 공동상속 허용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18.1.1. 이후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가업 영위기간 별<br>•10년이상 : 200억원<br>•20년이상 : 300억원<br>•30년이상 : 500억원 |
| '22.1.1. 이후 |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4천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23.1.1. 이후 |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5천억원 미만까지는 공제 가능 | 위와 같음 | 가업 영위기간 별<br>•10년이상 : 300억원<br>•20년이상 : 400억원<br>•30년이상 : 600억원 |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

◦ 세법상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이어야 합니다.

• 가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 요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 요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 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 · 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 가업 해당 업종 |
|---|---|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br>[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 나. 광업(05 ~ 08) | 광업 전체 |
| 다. 제조업(10 ~ 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br>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br>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br>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라.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37 ~ 39) | 하수 ·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전체 |
| 마. 건설업(41 ~ 42) | 건설업 전체 |
|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 사. 운수업(49 ~ 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 자. 정보통신업 (58 ~ 63) | 출판업(58) |
| | 영상 · 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한다. |
| | 방송업(60) |
| |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정보서비스업(63) |
|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 연구개발업(70) |
|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

| | |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
|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
|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
|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파. 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
|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
|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
|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 가업 해당 업종 |
|---|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 |
|---|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 파. 「국민 평생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 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중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하는 사업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 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④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2) 피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4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최대주주 등 : 상증법 시행령 §19②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특수관계자 : 상증법 시행령 §2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함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 요건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③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4) 납부능력 요건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00%를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019. 1. 1.부터 시행

5)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

* 2020. 1. 1.이후 탈세·회계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2020.1.1.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법인가업인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업상속 후 5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 2020.1.1.~2022.12.31.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7년

1)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상속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가업용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처분하여 사후의무 요건을 위반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과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한 금액

• 기간별 추징율 : 2022.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 시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달리 적용하였음

| 기 간 | 추징율 |
|---|---|
| 5년 미만 | 100% |
| 5년 이상 7년 미만 | 80% |

* 2019.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7년 미만) 100%, (7년 이상 8년 미만) 90%, (8년 이상 9년 미만) 80%, (9년 이상 10년 미만) 70%

◦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위반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상증법 §18조의2⑨).

◦ 세무서장은 가업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이행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매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합니다.

*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이자상당액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상속세 부과당시 국기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 / 365

2)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증법 §18조의2⑤)

* 2019.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10년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가업용 자산'이란 개인가업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은 가업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배제)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분류 외 변경 허용)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배제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함)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90에 미달하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5년 후 판단)

• 기준고용인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기준총급여액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

3)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증령 §15⑥)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로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로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이월과세를 도입하였습니다(「소득세법」§97의2).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징세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봅니다.(상증법 §18의2⑩)

**•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 3.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특법 §30의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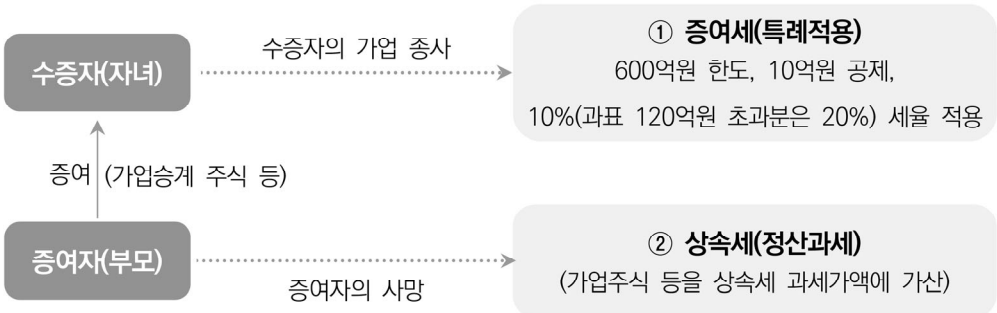


*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시 300억원, 20년 이상시 400억원, 30년 이상시 600억원 한도

◉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③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고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9.12.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2)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③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 가업 :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아니함)
- 중소기업 등 : ❶가업상속공제 편 참조
- 최대주주 등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 등을 말함

3) 증여 물건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4)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증여세 과세시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과액(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고,
- 합산한 결과 6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text{ 가업자산상당액 : 증여한 주식가액} \times \left(1 - \frac{\text{업무무관 자산가액}}{\text{총 자산가액}}\right)$$

◦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상속공제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어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사후관리

1)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 가업 주식의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 이자상당액 = 결정한 증여세액 ×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2.2/10000

- 사후 의무이행 위반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후 의무이행 위반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3)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특법 §30조의5)

이 규정은 2006.1.1. 신설하여 창업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는 한시적인 적용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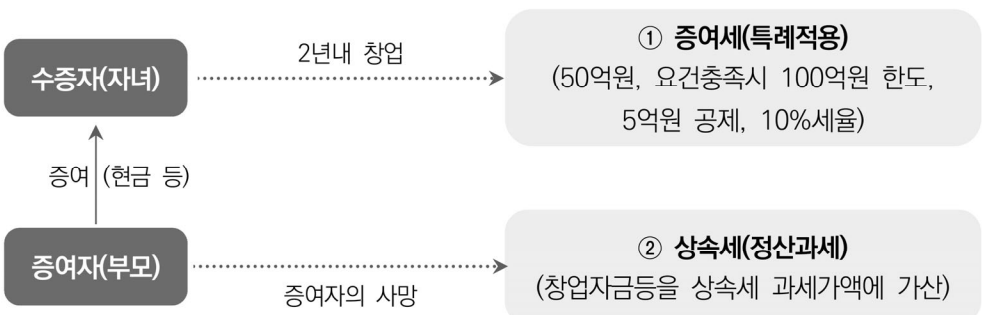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제한이 없이 특례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2)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3) 증여 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과세특례 신청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5) 창업중소기업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특법 §6③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합니다.
* 2019.12.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을 30%이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5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
- 과세가액 50억원(일정요건 충족시 10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 연납이 가능합니다.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상속세로 다시 정산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므로 공제한도액이 증가합니다.

  * 증여 당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1)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2019.12.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

2)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징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2/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을 과세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을 과세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과세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3)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위 2)-⑥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 위 2)-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1)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며,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 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

2)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 이자상당액 = 결정한 증여세액 ×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2.2/10000

## 5. 중소기업 등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상증법 §63③).

◉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총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비상장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 주식 등 할증평가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지배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1) 할증평가 대상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됩니다.

- 또한, 기업공개 준비 중이거나 거래소에 상장 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2) 최대주주 판단

◦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각호에서 규정한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3) 할증평가액 산정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함

* 2019.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지분율 50% 초과시 30% 가산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 × (1+할증률)

4) 할증평가 제외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2차 출자법인'이라 함)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0' 이하인 경우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2016.1.1. 이후 평가분부터)

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 중소기업 등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는 상증법상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제도'는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함

##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 보다 더 장기적으로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상증법 §71)

◉ 연부연납제도란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 연부연납 신청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함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연부연납 기간

◦ 연부연납기간은 아래 구분에 의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①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
② 가업상속이 아닌 일반 상속의 경우 → 10년, 증여의 경우 → 5년

**〈연부연납기간〉**

| 세 목 | | 연부연납기간 (2023.1.1. 이후 상속·증여분) |
|---|---|---|
| 상속세 | 가업상속재산 | • 20년간 분할납부(10년 거치 가능) |
| | 일반상속재산 | •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 증여세 | 일반증여재산 |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 | 가업승계재산* | • 1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 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20년이며 10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거치기간 선택시) 연부연납 신청 시에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1) 연부연납 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text{ 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 - 가업상속공제금액}}{\text{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금액}}]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1)}$$

*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함

◉ 연부연납 가산금

◦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연부연납 가산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 적용).
* 2020.2.11.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신청일 현재 이자율 적용(종전에는 신청일 당시 이자율 적용). 다만, 종전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020.2.11. 이후 납부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개정 규정 적용시에는 계속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2023.2.2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 기간 중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직전 납부기한 다음날 ~ 이자율 변경일 전일)에 대한 이자율은 변경 전 이자율 적용(단, 2023.2.28.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3.2.28. 이후 납부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가능)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14.3.14.~ '15.3.5. | '15.3.6.~ '16.3.6. | '17.3.15.~ '18.3.18. | '18.3.19.~ '19.3.19. | '20.3.13.~ '21.3.15. | '21.3.16.~ '23.3.19. | '23.3.20~ '24.3.21. | '24.3.22. ~ |
|---|---|---|---|---|---|---|---|
| 연 2.9% | 연 2.5% | 연 1.6% | 연 1.8% | 연 1.8% | 연 1.2% | 연 2.9% | 연 3.5% |

**〈연부연납 가산금의 계산〉**

①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연부연납 가산율

② 첫 회분 이후 납부할 가산금
(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 ×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 까지의 일수 × 연부연납 가산율

7.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

◦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가업을 상속·증여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증법 §72의2, 조특법§30의7)

| |
|---|
| • 적용대상 : 중소기업<br>• 지원내용 : 가업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br>※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br>• 신청방법 : 신고기한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br>• 사후관리 : 지분유지 요건 적용, 고용유지 요건 완화(90% → 70%), 업종유지 요건 면제 |

① 가업상속의 납부유예

-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 가업상속 공제 준용
- 납부유예 가능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frac{\text{가업상속재산가액}}{\text{총 상속재산가액}}$

②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 증여자 및 수증자 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
- 납부유예 가능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frac{\text{가업주식가액}}{\text{총 증여 재산가액}}$

# 제4장 특례 적용 시 유의사항

## 1. 중복지원 배제(조특법 §127)

◦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등의 자산, 국가등이 대납한 이자비용, 국가등의 저리융자시이자지원금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국가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투자관련 세액공제 등 적용 시 투자(취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조특법 §127①).

◦ 조특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127②).
- 이 때 중복적용의 판단기준은 투자자산별로 판단합니다.

◦ 동일한 과세연도에 내국인이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조특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 각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조특법 §127③).

◦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특법 제127조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면규정과 공제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127④).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각종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127⑤).

## 2. 농어촌특별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감면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 비과세·소득공제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불산입·준비금손금산입·특별감가 상각비의 계상 등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 유 형 | 비 과 세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
|---|---|
|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br>•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br>•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99의11) |

| | |
|---|---|
| 기술 및 인력 개발, 공익사업 등 국가 경쟁력 확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 |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br>•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특법§10의2)<br>•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br>•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의2)<br>•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13)<br>•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0의3)<br>•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br>•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3)<br>•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3의2)<br>•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4)<br>•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조특법§66, 67)<br>•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조특법§68)<br>•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4의8①,③) |
| 고용증대를 위한 감면 | •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30의2)<br>•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30의4) |
| 기 타 | • 조특법§121의2에 따른 감면 외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4⑦).

##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증설투자 시 감면 배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증설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조특법 §130)

| 구분 | 1989.12.31.이전 사업개시 | 1990.1.1.이후 사업개시 |
|---|---|---|
| 일반기업 | × (산업단지,공업지역,정보통신장비 등 ○) | × (정보통신장비 등○) |
| 중소기업 | | × (산업단지,공업지역,정보통신장비 등 ○) |

## 4. 최저한세의 적용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세제의 중립성·국민개납·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저한세 제도입니다.(조특법 §132)

◦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법인세법」 제2조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법 §55의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조특법 §100의32)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일부 공제·감면 항목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MAX(1, 2) + 3 − 4 ]

1.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후의 세액 (A)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소득공제, 익금불산입·비과세 금액,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 후의 세액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B)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소득공제, 익금불산입·비과세 금액 → 전의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중 큰 금액

3. 가산세 등
   - 가산세
   - 이자상당가산액
   -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

4. 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농업소득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 등

* A〈 B → (B ― A) 만큼 공제·감면 적용 부인(향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최저한세 적용세율

| 구 분 | 과세표준 | '10년 | ''11~12년 | '13년 | '14년 이후 |
|---|---|---|---|---|---|
| 중소기업 | 유예기간 4년 포함 | 7% | 7% | 7% | 7% |
| 일반기업 |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 8% | 8% | 8% |
| |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 9% | 9% | 9% |
| | 100억 이하 | 10% | 10% | 10% | 10% |
| | 1천억 이하 | 11% | 11% | 12% | 12% |
| | 1천억 초과 | 14% | 14% | 16% | 17% |

## 5. 구분경리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일부 감면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감면해 주는 제도이므로
- 내국인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 감면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소득}}{\text{과세표준}} \times \text{감면율}$$

## 5-1. 개 요

◦ '10.1.1. 개정 전에는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할 감면제도를 열거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분경리토록 하였으나,
- 개정 후에는 포괄규정방식으로 전환하여 감면사업은 원칙적으로 구분경리함을 명확화하고, 업종(감면비율)별 구분경리하여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감면을 적용합니다.(법 §143)
- 예시적으로 구분경리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 §6)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법 §7)
③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1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 기술 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
④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법 §10의2)
 * 연구개발출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만 익금불산입 가능
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 감면(법 §12의2)
⑥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세액감면의 승계(법 §31④,⑤)
⑦ 법인전환에 의한 세액감면의 승계(법 §32④)
⑧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법 §48)
 *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
⑨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대소득 소득공제(법 §55의2④)
⑩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이전 법인세 감면(법 §62④)
⑪ 수도권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63)
⑫ 수도권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법 §63의2)
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세액감면(법 §64)
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법 §66)
⑮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법 §67)
⑯ 농업회사법인 법인세면제 등(법 §68)
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법 §85의2③)
⑱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85의6)
⑲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법 §102)
⑳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법 §104의10)
㉑ 외국인투자 세액감면(법 §121의2, 법 §121의4)
㉒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법 §121의8)
㉓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법 §121의9②)
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법 §121의17②)
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법 §121의20)
㉖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21)
㉗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5-2. 구분경리 방법

◦ 구분경리는「법인세법」제113조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 공통손익 구분 | | 구분경리(안분계산) 방법 |
|---|---|---|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익금 |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
| 공통 손금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
|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 |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5)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3자리)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2자리)에 의합니다.(법칙 §75②)

◦ 구분경리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합니다.

- 개별손익 : 감면사업 또는 기타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되는 손익 또는 귀속 구분이 분명한 손익
- 공통손익 : 감면사업 또는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손익 또는 귀속 구분이 불분명한 손익

### 5-3. 개별손익·공통손익의 계산방법(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가. 개별익금

1)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 →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개별익금으로 구분

2)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
→ 개별익금으로 구분

**〈부수수익의 예시〉**

①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② 채무면제익
③ 원가차익
④ 채권추심익
⑤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⑥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3)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 구분 예시

① 수입배당금
② 수입이자

③ 유가증권처분익
④ 수입임대료
⑤ 가지급금인정이자
⑥ 고정자산처분익
⑦ 수증익

나.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과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합니다.

**〈공통익금의 예시〉**
①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②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③ 공통손금의 환입액
④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다. 개별손금
1)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합니다.
**〈개별손금의 예시〉**
① 매출원가
②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③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전입액
④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2)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예시
① 유가증권처분손
② 고정자산처분손

라.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과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공통손금의 예시〉**
① 사채발행비 상각
②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③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마.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님

바. 외환차손익

①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②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③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④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⑤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합니다.

⑥ 외환증서·외화표시예금·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⑦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합니다.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 임대보증금에 대한수입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법기통113-156…7)

### 5-4. 구분경리 사업간 결손금 통산방법

◦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일부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공제합니다.(조특법 §143③)

- 일부 사업에서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통산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통산함을 명확히 합니다.

# 제5장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 1.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

### 1-1.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 사업상 위기 및 재해 등으로 인해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유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납부기한 등 연장 최장 9개월, 압류·매각의 유예 최장 1년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압류매각유예는 중소기업일 것)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해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유예

◦ 납세유예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납세담보 면제금액 기준

| 금 액 | 유 형 |
|---|---|
| 7천만원 |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1억원 | ① 생산적 중소기업 ② 5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br>③ 사회적기업 ④ 장애인 표준사업장<br>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⑥ 재기 중소기업인<br>⑦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⑧ 스타트업 기업<br>⑨ 혁신중소기업 |
| 2억원 | ⑧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br>⑨ 종합인증우수업체(관세청)<br>⑩ 모범납세자 |
| 5억원 | ⑪ 세금포인트* |

* Min(사용가능 포인트 × 100,000원, 5억원)

### 1-2. 재기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1억원의 한도내에서 담보없이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을 최대 3년까지 유예함으로써 중소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시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이 지난후 15일 이내이나,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신고기한이 지난후 10일 이내에 지급하여 사업자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 1.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 지원대상

- 모범납세자, 혁신중소기업 등
- 직전년도 과세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이면서 3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3. 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금액 1천5백억원 미만 중소기업(개인 500억원)이 전년보다 일자리를 일정비율*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수입금액 5백억원 미만) 2% 이상, (수입금액 5백억~1천5백억원 미만) 3% 이상

- 상세한 지원요건, 제출기간 등의 내용은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됩니다.

## 4.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실시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조사기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장소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사업자의 사무실이 아닌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무실 간이조사'를 실시합니다.

## 5.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국세청은 2014. 3. 3.부터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 지식이 부족하여 혼자서 세금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

| 구 분 | 요 건 | |
|---|---|---|
| 개인납세자 | 소득금액 |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 | 재산가액 | •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 법인납세자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 | 자산가액 |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 또는 청구는 지원 제외

##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를 '16년 1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미리 알려주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사전 제공,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유의사항,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추이 제공

■ (연말정산 결과예상)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 스스로 예상세액을 간편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한 화면에서 손쉽게 모의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 (신고서 등 미리 채워주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요건에 맞는 공제항목을 확인·선택하면 그 소득·세액공제액을 신고서·부속명세서에 자동작성

**간편 제출 서비스**

■ (근로자)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 (회사) 온라인으로 제출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지급명세서) 자동 작성 가능

##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용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항목('06년 귀속 8개 → '24년 귀속 17개) :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

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 8. 택시사업자 유류세 환급

◦ 택시업계의 경영 지원을 위해 택시에 충전하는 LPG부탄에 대하여 kg당 40원의 유류세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당초 '10.4.30. 일몰예정이었으나 지속적인 택시업계의 경영 지원을 위해 '23.12.31.까지 연장
- 유류세 환급을 위한 택시 면세유류구매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9.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

◦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무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한다면 추후 과세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 10.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운영

◦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 |
|---|---|
|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 |
| 지원범위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br>* 단,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등은 제외 |
| 나눔세무사 ·회계사 |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로 구성 |
| 신청방법 |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 없이 126 → 3번으로)<br>-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

-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창업단계 | | 사업 성장단계 | | 폐업단계 |
|---|---|---|---|---|
| 창업자 멘토링 | ⇨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br>찾아가는 서비스 | ⇨ | 폐업자 멘토링 |

◦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사업진행단계의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

◦ 폐업자멘토링 서비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 11. 법인 세금포인트 제도

◦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부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부터 개인에게 만부여하던 세금포인트를 법인까지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1) 세금포인트 부여
- 대상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
- 대상세목 및 부여기준 : '12. 1. 1 이후 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자진납부세액 100,000원 당 세금포인트 1점 부여

2) 세금포인트 사용
- 납세담보 면제 :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요건*을 충족하며,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납세담보제공 면제로 사용 가능
  - 면제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원(연간 5억원 한도)
  - 신청세목 : 고지를 받았거나 신고·자진납부해야 할 모든 국세
    ※ 단,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국기법 §39),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국기법 §40), 연대납세의무에 의한 납부(국기법 §25) 등 본래의 세금포인트 소유자의 세금이 아닌 것은 제외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 참조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 소액체납자(1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포인트 사용하여 재산매각유예 혜택 부여(압류 유예·해제 등은 제외)
  - 체납처분 유예금액 : 세금포인트×10만원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 할인방법 : 제품 구매 시 1포인트 사용하여 5% 할인(구매금액 증가에 따라 필요한 세금포인트 증가)
  - 이용방법 :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할인 쇼

핑몰」

## 12.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 상속·증여세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배포

- 가업승계 세정지원팀 및 가업승계 상담창구 운영하여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3.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규정과 현장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함으로써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

  * 온·오프라인으로 세법교실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자·예비창업자를 위한 온라인 기초세법, 세목별 신고실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강좌 개설

  * 참가신청 :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일 2주~3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 14.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시행

◦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세무신고 과정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 2022.8월부터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컨설팅 받은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2025 지방세제 개편안

- 행정안전부 -

## Ⅰ 지방세기본법

### 1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 개정개요 ※국세 반영

| 현 행 | 개 정 안 |
|---|---|
| □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br>○ (대상) 상속인<br>○ (승계 범위) 상속재산<br>-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 □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 ❶, ❷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br>❶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br>❷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br>*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체납 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 |

□ 개정이유

○ ①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②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도록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2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안 법§83)

□ 개정개요 ※국세 반영

| 현 행 | 개 정 안 |
|---|---|
| □ 세무조사 사전통지<br><br>○ 통지사항 :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br>○ 사전통지 기한 :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보 |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및 재조사 사전통지 기한 별도 규정<br>○ (현행과 같음)<br><br>○ 사전통지 기한<br>- 세무조사의 경우 : 20일 전<br>-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 7일 전 |

□ 개정이유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재조사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세도 사전통지 기한을 국세 규정과 일치 필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

## 3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법§86, 법§86의2, 영§56의2, 영 §56의3(신설))

□ 개정개요 ※국세 반영

| 현 행 | 개 정 안 |
|---|---|
| □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br>○ <신 설><br><br><br><br>○ <신 설> | □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br>○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해 과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화<br>* 과세정보 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과세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br>○ 세무공무원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신설 |

□ 개정이유

○ 과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조치 사항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하여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 적용시기

○ 2026. 1. 1. 부터 적용

## 4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안 법§95)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시 보정요구 기간<br>* 기본법 §88⑧에 따라 본 조항 준용<br>○ (사유)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거나, 불복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미비한 경우<br>○ (기간)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br>※ "20일" 기간 고정 |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시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br>○ (현행과 같음)<br>○ (기간) 20일 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br>※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1~20일" 중 보정기간 조정 가능 |

□ 개정이유

- 과세관청이 보정 사유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기간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세정운영 합리성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부터 적용

## 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 (안 법§100, 영§66의2(신설))

□ 개정개요 ※국세 반영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 지방세 사건도 조심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합동회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결하는 경우 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br>* 합동회의 대상<br>- 행안부장관이 당사자인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br>- 지방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개정이유

○ 지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행안부장관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적용시기

○ 2026. 1. 1. 부터 적용

## 6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보호 업무·권한 추가(안 영§51의2)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 |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 추가 |
| ○ (업무) | ○ (업무) |
| -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br>-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br>-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br>-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br>-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25년 시행) | - (현행과 같음) |
| - <신 설> | - 마을세무사 운영<b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 - <신 설> | -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납세자 지원 |
|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현행과 같음) |
| ○ (권한) | ○ (권한) |
|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br>-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br>-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및 징계요구<br>-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 (현행과 같음) |
| - <신 설><br>※ '지방세심의위원회' 필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출석·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 |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참여 및 의견 제출 |
|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현행과 같음) |

□ 개정이유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활성화하고, 권리구제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II 지방세징수법

### 1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 확대 (안 법§40, §41, 영§46)

□ 개정개요 ※국세 반영

| 현 행 | 개정안 |
|---|---|
| □ 압류금지 재산<br>○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40)<br>-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 14종<br>- <신 설><br><br>○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41)<br>- 생업에 유지를 위한 물품<br>(농·어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 3종) | □ 대상 확대 및 조문체계 통일<br>○ 압류 금지 재산의 범위 확대<br>- (현행과 같음)<br><br>- 신체 보조 기구, 재해방지 또는 보안 관련 물건<br>○ (삭 제)<br>※ 압류 금지 재산(§40)으로 통합 |

□ 개정이유

○ (조문체계 통일)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통합, 타법*과 일치시켜 납세자 편의 도모하고,

*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대상 신설)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해 신체 보조 기구, 재해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한 물건을 추가하여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 Ⅲ 지방세법

##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적용기준 개선(안 법§7⑪)

□ 개정개요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 취득 시 적용 세율<br>○ (원칙) 무상세율 ※ 증여의제<br>○ (예외) 유상세율<br><table><tr><th>【유상세율 적용 사유】</th></tr><tr><td>① 공매,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td></tr><tr><td>②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 등 취득</td></tr><tr><td>③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의 교환</td></tr><tr><td>④ 매매 후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td></tr></table></td><td>□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 취득 시 적용 세율<br>○ (현행과 같음)<br>○ (예외) 유상세율<br><table><tr><th>【유상세율 적용 사유】</th></tr><tr><td>① (현행과 같음)</td></tr><tr><td>② (현행과 같음)</td></tr><tr><td>③ (현행과 같음)</td></tr><tr><td>④ 매매 후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br>→ 지급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증여로 간주<br>* 제도 취지 및 운영현황,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td></tr></table></td></tr>
</table>

□ 개정이유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저가 거래 등 조세회피 악용 수단 방지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산정방식 보완(안 법§10의3②, 영 §18의2)

□ 개정개요

| 현 행 | 개정안 |
|---|---|
| □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과세표준<br>○ (원칙) 시가인정액<br>○ <신 설> | □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과세표준 명확화<br>○ (현행과 같음)<br>○ (예외)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 개정이유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과세표준 적용방식 보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3 법인의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 명확화(안 법§10의6②)

□ 개정개요

| 현 행 | 개정안 |
|---|---|
| □ 지목변경 취득 시 과세표준<br>○ (원칙) 사실상 취득가격<br>○ (예외) 시가표준액<br>- 개인에 한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 지목변경 취득 과세표준 보완<br>○ (원칙) (현행과 같음)<br>○ (예외) 시가표준액<br>- 개인과 법인 모두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 |

□ 개정이유

○ 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라 간주취득 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 보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4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안 법§13⑤)

□ 개정개요

| 현 행 | 개정안 |
|---|---|
| □ 골프장 취득세 중과 대상<br>○ 회원제 골프장 신·증설 후 등록하는 경우*<br>*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br>○ <신 설> | □ 골프장 취득세 중과 대상<br>○ (현행과 같음)<br><br>○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

□ 개정이유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 강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5 법인 등 주택 유상취득 시 중과세 추징 절차 등 보완(안 법§20 등)

□ 개정개요

| 현 행 | 개정안 |
|---|---|
| □ 주택 취득시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추징 절차<br>○ (신고절차) 신고·납부 절차 없음<br>○ (납부세액) 차액(과소납부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br>* 중과세율 적용세액 – 기납부세액<br>**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취득일부터) | □ 주택 취득시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추징 절차<br>○ (신고절차) 신고·납부 절차 신설<br>○ (납부세액)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차액을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br>※ 과밀억제권역 취득 중과 유예 후 유예 조건 미충족시 신고납부 중 |

□ 개정이유

○ 주택 취득 후 사후적 사유 발생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자발적 신고납부 유도 및 가산세 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중과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6 시가인정액 평가 차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 보완(안 법§21③)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납세자가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br>○ 면제 대상 가산세<br>- 무신고 가산세<br>- 과소신고 가산세<br>- <신 설> | □ 가산세 종류 보완<br>○ 면제 대상 가산세<br>- (삭 제)<br>- (현행과 같음)<br>- 납부지연 가산세 |

□ 개정이유

○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 정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7 인구감소지역 내 임대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등(안 영§28조의2 등)

□ 개정개요

| 현 행 | 개정안 |
|---|---|
| □ 주택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br><br>○ <신 설> | □ 주택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에 민간임대주택 포함<br>○ (대상) 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10년·6년) 민간임대주택<br>○ (적용기간) 1년 한시 중과제외 및 임대기간동안 주택 수 제외 |

□ 개정이유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후속조치로서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주택(10년·6년) 취득 시 중과세 및 주택 수 제외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1년간('26.1.1~12.31) 한시 적용

## 8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과 제외(안 영§28조의2 등)

□ 개정개요

| 현 행 | 개정안 |
|---|---|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 제외<br><br>○ 주택 수 제외<br>- (대상) 비수도권 소재, 85㎡ 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br>- (적용기간) ~ '25.12.31.<br>- (기존 주택 수 제외 기간*)<br>~ '26.12.31.<br>* 미분양 주택 매입 후 다른 주택 취득 세부담 완화 위해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1년)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중과 제외를 통한 세제지원 확대<br><br>○ 중과 제외로 세부담 완화 확대<br>- (대상) 현행과 같음<br><br>- (적용기간) ~ '26.12.31.<br>- (기존 주택 수 제외 기간*)<br>~ '27.12.31.<br>* 현행 주택 수 제외 규정과 동일하게 추가 1년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 |

□ 개정이유

○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후속 조치로서 기존 주택 수에 따라 지원 효과가 상이한 '주택 수 제외*' 대신, 취득세 완화 효과가 큰 '중과배제**'로 세제 지원 확대(~'26.12.31.까

지 1년 한시 적용)

* 〈주택수 제외 효과〉 (기존 2주택자) 8% → 1~3% (기존 3주택 이상자) 12% → 8%

** 〈중과배제 효과〉 주택수 관계없이 1~3%

- 미분양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 취득시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추가로 1년 동안(~'27.12.31. 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1년간('26.1.1~12.31) 한시 적용

## 9 CR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중과세 제외 연장(안 영§28의2 16)

□ 개정개요

| 현 행 | 개정안 |
|---|---|
| □ CR리츠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중과세 제외*<br>* 법인 주택 취득세율 12% → 1~3%<br>○ 대상 요건 (모두 충족)<br>-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br>-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br>*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미분양만 대상<br>○ 기간 요건<br>- 취득기간 : '24.3.28. ~ '25.12.31. | □ CR리츠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중과세 제외 일몰 연장<br><br>○ 대상 요건<br>(현행과 같음)<br>○ 적용 기간 1년 연장<br>- 취득기간 : '24.3.28. ~ '26.12.31. |

□ 개정이유

○ 지방 건설경기 및 주택 시장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10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금액 위임 규정 변경(안 법§71)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시군과 교육청에 안분되는 조정교부금 등의 안분기준 및 안분금액을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법 §71③) | □ 시군과 교육청에 안분되는 조정교부금 등의 안분기준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안분금액'은 법에서 삭제(법 §71③) |

| | |
|---|---|
| ○ 안분기준과 함께 매년 개정이 필요한 '안분금액'도 시행령으로 규정(영 §75②)<br>※「지방세법 시행령」 별표2~5에 안분 기준 및 안분금액 규정 | ○ 안분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매년 변동되는 '안분금액'은 행안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영 §75②) |

□ 개정이유

○ 매년 변동되는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 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고시로 위임하여 법령 체계의 합리성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 11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신설 (안 영§78의2)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제외<br>○ 소득세법의 비과세 대상 급여<br>○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급여 등<br>○ <신 설> | □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신설<br><br><br>○ 출산 전·후 휴가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급여 |

□ 개정이유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에 기여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12 비수도권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신설 (안 영§78의2)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제외<br>○ 소득세법의 비과세 대상 급여<br>○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급여 등<br>○ <신 설> | □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신설<br><br><br>○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소재 중소기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 |

□ 개정이유

○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원들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청년층의 수도권 이직 방지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13 국세 특례 종료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법§93②)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특례<br>○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br>*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인용 |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특례 삭제<br>○ 삭제(인용조문 일몰) |

□ 개정이유

○ 국세 과세특례 종료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삭제하여 지방세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부터 적용

## 14 국외전출자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변경(안 법§103의3⑧)

□ 개정 개요 ※ 국세 반영

| 현 행 | 개 정 안 |
|---|---|
| □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율<br>○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국내주식 등'의 용어 사용<br>* 「소득세법」 제118조의9(국내주식 등) | □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율 용어 변경<br>○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에 따라 '주식 등'으로 용어 변경<br>* 「소득세법」 제118조의9(국외주식 포함) |

□ 개정이유

○ 국외전출자의 과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 15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안 법§103의19②)

□ 개정개요 ※ 국세 반영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과세표준 차감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br>○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br>*「법인세법」제57조의2 |

□ 개정이유

○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6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안 법§103의20①)

□ 개정개요 ※ 국세 반영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법인지방소득세율 및 과표구간<br>○ (일반법인)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2억원 이하</td><td>0.9%</td></tr>
<tr><td>2억원 ~ 200억원</td><td>1.9%</td></tr>
<tr><td>200억원 ~ 3,000억원</td><td>2.1%</td></tr>
<tr><td>3,000억원 초과</td><td>2.4%</td></tr>
</table>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br>* ❶~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br>❶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br>❷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br>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200억원 이하</td><td>1.9%</td></tr>
<tr><td>200억원 ~ 3,000억원</td><td>2.1%</td></tr>
<tr><td>3,000억원 초과</td><td>2.4%</td></tr>
</table></td>
<td>□ 법인지방소득세율 상향 조정<br>○ (좌 동)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2억원 이하</td><td>1.0%</td></tr>
<tr><td>2억원 ~ 200억원</td><td>2.0%</td></tr>
<tr><td>200억원 ~ 3,000억원</td><td>2.2%</td></tr>
<tr><td>3,000억원 초과</td><td>2.5%</td></tr>
</table>
○ (좌 동)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200억원 이하</td><td>2.0%</td></tr>
<tr><td>200억원 ~ 3,000억원</td><td>2.2%</td></tr>
<tr><td>3,000억원 초과</td><td>2.5%</td></tr>
</table></td></tr>
</table>

□ 개정이유

○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1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한 연장(안 법§103의23①)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br>○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br>○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

□ 개정이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납세 편의를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18 금전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안 법§107②, 영§106)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br>○ (원칙) 위탁자<br>○ (예외) 수탁자<br>- (요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br>- (대상) 지역·직장주택조합 | □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개선<br>○ (현행과 같음)<br>○ (예외) (현행과 같음)<br>- (요건) (현행과 같음)<br>- (대상) 지역·직장주택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
| □「지방세법 시행령」 위임<br>○ <신 설> | □ 조합의 범위<br>○ (대상)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재개발조합, 주택정비사업조합 등 |

□ 개정이유

○ 납세자 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19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 명확화(안 법§108)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선박에 대한 납세지<br>○ 선적항 소재지<br><br>-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 소재지,<br>-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br>< 참고 ><br>※ 선박 취득세 납세지<br>❶ 선적항 소재지, 단,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지<br>❷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 소재지,<br>❸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 | □ 동력수상레저기구 납세지 명확화<br>○ (현행과 같음)<br>- 단,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지'<br>- (현행과 같음) |

□ 개정이유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등록지"로 규정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범위 개선(안 법§112)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규정 | □ 비과세 대상 등 정비 |

| | |
|---|---|
| ○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 | ○ (대상)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중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한 토지<br>○ (범위)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br>※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

□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혼란 방지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1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확대 및 규정 명확화 (안 법§119의2①)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br>○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 발생 | □ 물적납세의무범위 확대<br>○ 신탁재산의 범위에 수탁자가 「신탁법」제27조에 따른 사유로 신탁재산에서 얻은 재산을 추가 |

□ 개정이유

○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 시 신탁재산의 범위에 「신탁법」제27조에 따른 재산을 포함

※ 「신탁법」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2 빈집 철거 후 공용·공공용 사용토지 세부담 추가 완화(안 영§103의2, §118)

□ 개정개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25.5.1.)」 후속조치

| 현 행 | 개 정 안 |
|---|---|
|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br>○ 빈집 철거 후 3년간 별도합산 적용<br><br>○ 세부담 상한 계산 시 철거 전 주택(빈집)에 과세된 세액을 5년간 활용 | □ 공용·공공용 사용토지의 세부담 완화 기간 확대<br>○ 국가·지자체와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 전체 별도합산 적용<br>○ 국가·지자체와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 전체 활용 |

□ 개정이유

○ 빈집 관련 재산세 부담 감소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 필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3 자동차세 연납 규정 조문 정비 (안 법§128③)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연세액의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br>○ 연세액 :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br>○ 연납공제액 산출 시 연세액 : 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br><br>□ 연납 공제액 산출 방식이 법률과 시행령에 중복하여 규정 | □ 연납 공제액 산출 기준 명확화<br>○ '연세액' 용어와 공제액 산출 계산식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br><br>□ 공제액 산정 방식을 알기쉽게 정비하여 시행령에 규정 |

□ 개정이유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공제액 산출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법령체계 정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4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근거 규정 명확화 (안 법§147②)

□ 개정개요

| 현 행 | 개정안 |
|---|---|
| □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고지<br>○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br>- 수탁자에게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물적납세의무 부여*<br>*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 | □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근거 규정 명확화<br>○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재산세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 추가 |

□ 개정이유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며,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또한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 따라,

-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토록 관련 근거 명확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 1 지방세 특례 범위 명확화 등(법 §2①5의2, 6., §4①, §75의3, §80의2)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 인구감소지역 정의 신설 |
| □ 지방세 특례의 범위<br>○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 □ 범위 명확화<br>○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 등 |

□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 신설 필요

○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 과세표준 공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 신탁재산 관련 감면 적용 특례 신설(안 법 §2①8, §185)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br>○ 위탁자가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 시 감면 적용<br>-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수탁자에 형식적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

□ 개정이유

○ 부동산의 실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사실상의 실태가 동일하다면 형식적 소유권이전에 따른 신탁 활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3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 규정 정비(법 §4⑦)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예외<br>○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감면에 대해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규정 정비<br>○ (삭 제) |

□ 개정이유

○ 행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감면에 대해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 적용 대상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정비율 이내로 조례감면 총량관리
※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5%이내 총량 별도 추가고시 가능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4 농지확대개발 등을 위한 감면 연장(안 법§8①, ②)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농지확대개발 등 농지 감면<br>○ 감면대상 및 감면율<br>- 농지확대개발 및 교환·분합용 농지 : 취득세 100%<br>※ 최소납부세제 배제<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연장<br>○ (현행과 같음)<br><br><br><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농업·임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해 농림 산업 경쟁력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5 임업후계자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8③)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임업후계자 등 취득세 감면<br>○ (감면대상 및 감면율)<br>-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 100%<br>- 보전산지 임야 : 50%<br><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연장 및 임업 사용 요건 추가<br>○ (감면대상)<br>- (현행과 같음)<br><br>-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보전산지 임야 : 50%<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농업·임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해 농림 산업 경쟁력 제고

-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보전산지에 “임업 직접 사용” 요건 추가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6 소형어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9②, ③)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소형어선 등 어업인 지방세 감면<br>○ 감면대상 및 감면율<br>- 소형어선 :<br>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00%<br>- 어업·양식업권 : 취득세·등록면허세 100%<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연장<br>○ 감면대상 및 감면율<br>- (현행과 같음)<br>- 어업·양식업권 : 취득세 100%<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어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해 어업 경쟁력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7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13②)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br>○ 감면대상 및 감면율<br>- 농지매매사업 등 농지1호,5호<br>: 취득세 50%<br>- 농업생산기반시설1-2호<br>: 취득세 50%, 재산세 75%<br>- 경영회생 지원용 농지 등2호,3호<br>: 취득세 50%, 재산세 50% | □ 감면대상 정비 및 감면 연장<br>○ 감면대상 및 감면율<br>- 농지매매사업 등 농지<br>: 취득세 25%<br>- 농업생산기반시설<br>: 취득세 50%, 재산세 75%<br>- 경영회생 지원용 농지 등<br>: 취득세 50%, 재산세 50% |

| | |
|---|---|
| - 조성토지 처분특례1-3호 : 취득세 50%<br>- 생활환경정비사업·재개발 사업용 토지 등4호,4-2호 : 취득세 25%<br>○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농어업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 및 과세 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감면 연장(안 법§15①, ②)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농수산유통공사 등 감면<br>○ 감면대상 및 감면율<br>-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 취득세·재산세 50%<br>- 지방농수산물공사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br>※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부칙) ~25.12.31.<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연장<br>○ (현행과 같음)<br><br><br><br>※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종료<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면 연장(안 법§18)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br>○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br>- 취득세·재산세 25%<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연장 및 감면대상 명확화<br>○ (현행과 같음)<br><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등을 위한 지방세 지속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10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22)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 등 감면<br>○ 사회복지법인·한국한센복지협회<br>- 취득세·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br>○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br>- (유료) 취득세25% 재산세25%<br>- (무료) 취득세 면제, 재산세50%<br>○ 사회복지법인등 설립등기 및 면허<br>-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면제<br>○ 사회복지법인등 사업소<br>-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면제<br>○ (일몰기한) 2025.12.31.<br><br>□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추징<br>○ 5년 이내 수익사업 사용시<br>○ 3년 이내 해당 용도로 미사용<br>○ 직접 사용 개시 후 2년 미만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br>○ (신설) | □ 감면 연장 및 재설계<br>○ (현행과 같음)<br><br>○ (현행과 같음)<br><br>○ (현행과 같음)<br><br>○ (현행과 같음)<br><br>○ (현행과 같음)<br><br>○ (일몰기한) 2028.12.31.<br><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br>○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

□ 개정이유

○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또는 시설 폐쇄를 추징사유로 신설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11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구체화(안 법 §23)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 감면 | □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감면 대상 구체화 |
| ○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 목적사업* 직접사용 부동산<br>* 공사·공단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감면 대상의 범위를 포괄·추상적 고유업무에서 구체화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등 공익적 역할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12 근로복지공단 감면 연장(안 법§27①)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면 | □ 감면 연장 |
| ○ 목적사업용 부동산<br>- 취득세 25% | ○ (현행과 같음)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증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13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안 법§28②, ③)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감면<br>○ 목적사업용 부동산<br>- 취득세·재산세 25%<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연장<br>○ (현행과 같음)<br><br>○ (일몰기한) 2028.12.31. |
|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 감면<br>○ 목적사업용 부동산<br>- 취득세 25%<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연장<br>○ (현행과 같음)<br><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산업재해 예방 및 기업·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30①)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면<br>○ 목적사업용 부동산(의료 및 연구사업 外)<br>- 취득세·재산세 25%<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연장<br>○ (현행과 같음)<br><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15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자 확대(안 법§31⑥)

□ 개정개요

| 현 행 | 정부안 |
|---|---|
| □ 공공매입임대주택 지방세 감면<br>○ (감면대상자) LH, 지방주택공사<br>○ (감면대상) 매입하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등 (부속토지 포함)<br>※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주거용), 기숙사<br><br>○ (감면율) 취득세 25%, 재산세 50% 감면<br>○ (일몰기한) 2027.12.31. | □ 감면대상자 확대 (HUG 추가)<b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br>○ (현행과 같음)<br><br><br><br><br><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 |

□ 개정이유

○ 현재 LH·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중(취득세 25%, 재산세 50%)

○ 감면대상에 HUG*를 포함하여 LH 등과 과세형평성 제고 및 주로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 (든든전세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주택을 HUG가 경매로 낙찰받거나, 협의매수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16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및 확대(안 법§33의3)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감면<br>○ (감면대상자) 사업주체<br>○ (감면대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 □ 감면 1년 연장<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 |

| | |
|---|---|
| ※ 전용면적 85㎡·취득가액 3억원 이하<br>- (취득기간) 2024.1.10. ~ 2025.12.31. 신축 취득<br>- (임대조건) 2025.12.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br>○ (감면율) 취득세 최대 50% 감면(법25%+조례25%) | - (취득기간) 2024.1.10. ~ 2026.12.31. 신축 취득<br>- (임대조건) 2026.12.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br>○ (현행과 같음) |
| 〈신 설〉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신설<br>○ (감면대상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개인<br>○ (감면대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br>※ 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br>- (취득조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 취득 조건<br>○ (감면율) 취득세 최대 50% 감면(법25%+조례25%)<br>○ (일몰기한) 2026. 12. 31. |

□ 개정이유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물량 해소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①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사업주체)

② 공포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개인구입자)

## 17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안 법§36의3)

□ 개정개요

| 개정 전 | 개정 후 |
|---|---|
| □ 생애최초 주택 감면<br>○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12억원 이하의 주택<br>○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br>- 소형주택*<br>*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전용면적 60㎡이하3억원(수도권 6 | □ 감면 연장 등<br>○ (현행과 같음)<br>※ 상시 거주 추징 요건 합리화<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 |

| | |
|---|---|
| 억원) 이하<br>※ 최소납부세제 배제<br>〈신 설〉<br><br>○ (일몰기한) 2025.12.31.<br><br>□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br>○ 임차인이 1년 이상 상시거주한 소형주택*을 '24.1.1.부터 '25.12.31.까지 취득한 경우<br>*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전용면적 60㎡이하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 ○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br>※ 최소납부세제 배제<br>○ (일몰기한) 2028.12.31.<br><br>□ 소형 임차주택 종료<br>○ (종료) |

□ 개정이유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세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기여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18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36의5)

□ 개정개요

| 현 행 | 정부안 |
|---|---|
|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br>○ (감면대상 주택) 자녀와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 주택(주택 수 무관)<br>○ (감면내용) 취득세 100%(500만원 限)<br>○ (일몰기한) 2025.12.31.<br><br>□ 사후관리 규정<br>○ '생애최초 취득 주택 감면(§36의3)' 규정 인용<br>○ (추징 요건)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등<br>○ (추징배제) 기존 거주자의 퇴거 지연 등으로 상시거주 지연 | □ 감면대상 확대 및 명확화 등<br>○ 1자녀당 1주택 감면 명확화<br><br>○ (좌 동)<br>○ (일몰기한) 2028.12.31.<br><br>□ 사후관리규정 합리화<br>○ 감면 조문에서 직접 규정<br><br>○ (추징요건 합리화)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등<br>○ (추징배제 요건 삭제)<br>※ 상시거주를 감면요건에서 제외에 따라, 추징배제 요건 불요 |

□ 개정이유

○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시 세부담 완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19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및 연장(안 법§46)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br>○ 중견기업 등<br>- 취득세·재산세 35%<br>○ 대기업(과밀억제권역 外)<br>- 취득세·재산세 35%<br>○ 초기 중견기업<br>- 취득세·재산세 50%<br>○ 중소기업<br>- 취득세 60%·재산세 50%<br>○ 추가감면 대상<br>- 신성장·원천기술 15% 추가 감면<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확대 및 재설계<br>○ 중소기업<br>- 수도권취득세·재산세 45%<br>비수도권취득세·재산세 60%<br>○ 대기업<br>- 비수도권취득세·재산세 35%<br>○ 그 밖의 기업<br>- 수도권취득세·재산세 30%<br>비수도권취득세·재산세 45%<br>○ 추가감면 대상 확대<br>- 국가전략기술 15% 추가 감면<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가전략기술 감면 확대를 통한 국가·기업 경쟁력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 신축에 대한 추징규정 완화(안 법 §46, §75의5, §90)

□ 개정개요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감면 적용 후 추징규정
<table>
<tr><th>감면</th><th>추징 사유</th></tr>
<tr><td>기업부설 연구소</td><td>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신·증축 대수선의 경우 2년)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지 못한 경우</td></tr>
<tr><td>인구감소 지역</td><td>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td></tr>
<tr><td>마을회</td><td>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td></tr>
</table></td><td>□ 추징규정 완화
<table>
<tr><th>감면</th><th>추징 사유</th></tr>
<tr><td>기업부설 연구소</td><td>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신축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2년)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지 못한 경우</td></tr>
<tr><td>인구감소 지역</td><td>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신축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2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td></tr>
<tr><td>마을회</td><td>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신축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2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td></tr>
</table></td></tr>
</table>

□ 개정이유

○ 현재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하고 있으나,

- 신축의 경우 공사소요기간 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직접 사용개시의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년으로 완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1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7)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환경 복합시설 등 부동산 감면 | □ 감면 연장 |
| ○ 취득세·재산세 25% | ○ (현행과 같음)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방세 지속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2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안 법§47의6)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br>○ 법령상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시<br>- 취득세 면제<br>- 재산세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유인을 통한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3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8)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 감면<br>○ 취득세·재산세 25%<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연장<br>○ (현행과 같음)<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국립공원의 보전, 공원관리사업의 효율적 관리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4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49)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오염 방제업무용 부동산·선박 감면 | □ 감면 연장 |
| ○ 취득세·재산세 25% | ○ (현행과 같음)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해양환경의 보전 지원 및 어촌 지역 환경 개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5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안 법§54)

□ 개정개요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개발용 부동산</td><td>□ 감면 재설계</td></tr>
<tr><td>○ 취득세 25%(+조례 25%)</td><td>○ 지역별 취득세 감면 재설계
<table>
<tr><th>구분</th><th>감면율</th></tr>
<tr><td>수도권</td><td>취득세 10%(+조례 25%)</td></tr>
<tr><td>비수도권</td><td>취득세 25%(+조례 25%)</td></tr>
<tr><td>인구감소지역</td><td>취득세 40%(+조례 25%)</td></tr>
</table></td></tr>
<tr><td>○ (일몰기한) 2025.12.31.</td><td>○ (일몰기한) 2028.12.31.</td></tr>
</table>

□ 개정이유

○ 서비스 중심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등 他 산업과의 연계효과가 큰 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지속하되,

- 수도권·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종전 감면 규정 적용

## 26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안 법§57의5)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PFV 사업정상화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br>○ 취득세 50% ※중과 배제<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연장<br>○ (현행과 같음)<br>○ (일몰기한) 2027.12.31. |

□ 개정이유

○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 중단 및 수익성이 악화된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정상화 지속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7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직접 사용 부동산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58④)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br>○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br>-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br>※ 재산세 조례 +15% 가능<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대상 재설계 및 감면 연장<br>○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부동산<br>- 취득세 수도권 35%, 비수도권 50%<br>재산세 5년 수도권 20%, 비수도권 35%<br>※ 재산세 조례 +15% 가능<br>※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감면율 적용<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속 지원으로 지역의 소비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 기여하고,

-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8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안 법§58의2①·②)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br>○ 시행자의 직접사용 및 임대·분양 목적 부동산<br>-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 | □ 감면 재설계 및 감면 연장<br>○ 수도권·비수도권 감면율 차등 적용<br>- 취득세 수도권 15%, 비수도권 35%<br>재산세 5년간 수도권 15%, 비수도권 35%<br>※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감면율 적용 |
| ○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br>-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 | ○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속 지원으로 한정된 용지에 대한 도시 내 산업입지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되,

-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

## 29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60①)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중소기업협동조합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감면<br>○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용<br>- 취득세 50% 감면(전통시장 상인 등 75%) | □ 감면 연장<br>○ (현행과 같음)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방세 지속 지원 필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30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60④)

□ 개정개요

| 현 행 | 정부안 |
|---|---|
| □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직접 사용 부동산<br>○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br>- 취득세 50% 감면<br>- 재산세 50% 감면<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연장<br>○ (현행과 같음)<br><br><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지방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비영리기관으로 지방세 지원을 통해, 기업 경영, 일자리, 창업 지원 등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31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63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국가철도공단 부동산 및 철도차량 지방세 감면<br>○ 철도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 25%<br>○ 국가 등 귀속 철도차량 및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br>※ 최소납부세제 배제 | □ 감면 연장 및 재설계<br>○ (현행과 같음)<br>○ 국가 등 귀속 철도차량 및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100%(반대급부 無), 50%(반대급부 有)<br>※ 최소납부세제 배제 |

| | |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 한국철도공사 부동산 및 철도차량 지방세 감면 | □ 감면 연장 및 도시지역분 정비 |
| ○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25%, 재산세 50% |
| ○ 일반철도차량 : 취득세 50%<br>※ 고속철도 : 취득세 25% | ○ (현행과 같음)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 지방도시철도공사 부동산 및 철도차량 감면 | □ 감면 연장 |
|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등록면허세 100%*<br>*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br>※ 최소납부세제 배제 | ○ (현행과 같음)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 ㈜SR 철도차량 감면 | □ 감면 연장 |
| ○ 고속철도차량 : 취득세 25% | ○ (현행과 같음)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32 교환자동차(수소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66⑥)

□ 개정개요

| 현 행 | 정부안 |
|---|---|
| □ 고시된 수소전기화물자동차 | □ 감면 연장 |
| ○ 취득세 50% 감면 | ○ (현행과 같음)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수소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방세 지원 지속 필요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33 한국교통안전공단 부동산 감면 연장(안 법§69)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연구 및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 감면<br>○ 취득세 25%<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연장<br>○ (현행과 같음)<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도모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34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71①,②)

□ 개정개요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물류단지 부동산 감면(§71①·②)<br>○ 사업시행자<br>- 취득세 35%, 재산세 25%*<br>* 조례 10% 추가 可</td><td>□ 감면 연장 및 재설계<br>○ 사업시행자<br><table><tr><th>지역</th><th>감면율</th></tr><tr><td>수도권</td><td>취 25% 재 15%</td></tr><tr><td>비수도권</td><td>취 35% 재 25%</td></tr><tr><td>인구감소지역</td><td>취 50% 재 35%</td></tr></table></td></tr>
<tr><td>○ 입주기업<br>- 취득세 50%·재산세35%(5년)</td><td>○ 입주기업<br><table><tr><th>지역</th><th>감면율</th></tr><tr><td>수도권</td><td>취 35% 재 25%(5년)</td></tr><tr><td>비수도권</td><td>취 50% 재 35%(5년)</td></tr><tr><td>인구감소지역</td><td>취 75% 재 50%(5년)</td></tr></table></td></tr>
<tr><td>○ (일몰기한) 2025.12.31.</td><td>○ (일몰기한) 2028.12.31.</td></tr>
</table>

□ 개정이유

○ 물류비용 절감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수도권·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적용시기

○ '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수도권 지역 사업시행자가 이 법 시행 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 입주기업이 이 법 시행 전 취득한 물류시설용 부동산(5년 내)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종전 규정 적용

## 35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71의2)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br>○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용 토지 및 물류시설<br>: 취득세 15%(+조례10%)<br>○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부동산<br>: 취득세 40%(+조례10%)<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연장<br>○ (현행과 같음)<br><br><br><br><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물류비용 절감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36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및 재설계(안 법§72)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 | |
|---|---|
| ○ 목적사업용 부동산<br>- 취득세 2%p 경감<br>-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주민세(사업소·종업원) 면제<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재설계 등<br>- 취득세 25%<br>- 재산세 면제<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읍·면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보편적 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면율 재설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37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74)

□ 개정개요

| 현 행 | 정부안 |
|---|---|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br>○ (도시개발사업)<br>- 시행자 : 체비지·보류지 취득세 75% 감면<br>○ (주거환경개선사업)<br>- 시행자 : 대지조성용 주택 및 체비지·보류지 취득세 75% 감면<br>- 부동산소유자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br>○ (재개발사업)<br>- 시행자 : 대지조성용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주택 취득세 50% 감면<br>- 부동산소유자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취득세 75% 감면, 60㎡초과 85㎡이하 주택 취득세 50% 감면 (1가구 1주택 限)<br>○ (일몰기한) 2025.12.31.<br>※「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2023.3.14.) 부칙 제11조 : 2023.1.1. 이전 환지계획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부동산의 소유자 취득 부동산 종전 규정에 따라 2025.12.31.까지 감면 | □ 감면 연장<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 (일몰기한) 2028.12.31.<br>※「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2023.3.14.) 부칙 제11조 : 2028.12.31.까지 감면 연장 |

□ 개정이유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38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75의2)

□ 개정개요

| 현 행 | 정부안 |
|---|---|
|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 및 감면 연장 |
| ○ (감면대상) 기업도시개발구역 內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 | ○ (현행과 같음) |
|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적용 | ○ 취득세 : (현행과 같음)<br>○ 재산세 :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50%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적용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신 설〉 | ○ 창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준용 |

□ 개정이유

○ 기업도시·낙후지역의 개발 육성을 통한 지방 투자 촉진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39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명확화(안 법§75의4)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감면 | □ 감면 연장 및 명확화 |

| | |
|---|---|
| ○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br>- 취득세 면제 | ○ (현행과 같음) |
| ○ (신설) | ○ 창업의 의미 명확화<br>-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정<br>* 합병·분할, 현물출자, 법인전환 등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각종 규제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창업 관련 타 조문과의 형평성 및 정합성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40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등(안 법§75의5)

□ 개정개요

□ 개정이유

| 현 행 | 개 정 안 |
|---|---|
|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등에 대한 감면 | □ 감면 연장 및 명확화 등 |
| ○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br>- 취득세 면제<br>- 재산세 5년 100% + 3년 50% | ○ (현행과 같음) |
| ○ (신설) | ○ 창업의 의미 명확화<br>-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규정<br>* 합병·분할, 현물출자, 법인전환 등 |
| ○ 사후관리 규정<br>-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 사후관리 완화<br>-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신축시 해당 토지는 2년)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 ○ 일몰기한<br>- ‘25.12.31.까지 | ○ 일몰기한 연장<br>- ‘28.12.31.까지 |
|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 □ 감면 확대 및 감면한도 신설 등 |
| ○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 ○ (지원지역 확대)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 | |
|---|---|
| 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 으로 확대<br>*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 예정('25.11.28.)<br>○ (취득원인 확대) 신축으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 |
| ○ 취득세 25% ※ 조례로 25% 추가 가능 | ○ 감면한도 150만원 신설<br>- 법률에 따른 감면한도 75만원<br>- 조례로 추가감면시 150만원<br>※ 감면대상 주택 취득가액을 상향하며 한도 신설 |
| □ (신설) | □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br>○ 사원에게 임대·무상 제공용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 감면 신설<br>- 취득세 25% ※ 조례로 25% 추가 가능<br>○ 사후관리 규정<br>-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신축시 해당 토지는 2년)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br>- 직접 사용일부터 2년 미만에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 |

○ 생활인구 유입 증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적용시기

○ '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41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안 법§75의6)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br>○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5년간) 감면<br>○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는 주택·건축물 취득세 25% 감면(75만원 限)<br>- 조례에 따라 25%, 한도 75만원 추가 가능<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빈집의 정비·활용을 지원을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철거 후 토지에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42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78)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 감면 재설계 및 감면 연장 |
| ○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조성<br>- 취득세 35%,<br>- 재산세 35%(비수도권의 경우 60%) 감면 | ○ (현행과 같음)<br>- 취득세 15%~50% 감면(수도권 15%, 비수도권 35%, 인구감소지역 50%)<br>- 재산세 15% ~ 60% 감면(수도권 1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60%) |
| ○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분양임대<br>- 취득세 35%,<br>- 재산세 5년간* 35%(비수도권의 경우 60%) 감면<br>*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 ○ (현행과 같음)<br>- 취득세 15%~50% 감면(수도권 15%, 비수도권 35%, 인구감소지역 50%)<br>- 재산세 5년간* 15% ~ 60% 감면(수도권 1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60%)<br>*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및 산업용건축물 |
| ○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직접 사용<br>- 취득세 35%,<br>- 재산세 5년간 35%(비수도권의 경우 60%) 감면 | ○ (현행과 같음)<br>- 취득세 15%~50% 감면(수도권 15%, 비수도권 35%, 인구감소지역 50%)<br>- 재산세 15% ~ 60% 감면(수도권 1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60%) |
| ○ 산업단지 입주기업<br>- 취득세 50%(대수선 25%)<br>※ 조례 +25%(대수선 +15%)<br>- 재산세 5년간 35%(비수도권의 경우 75%) 감면 | ○ (현행과 같음)<br>- 취득세 35%~75%(대수선 25%)(수도권 3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75%)<br>※ 조례 +25%(대수선 +15%)<br>- 재산세 5년간 35% ~ 75% 감면(수도권 35%, 비수도권· 60%, 인구감소지역 75%)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산업단지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속 지원하되,

- 수도권·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

## 43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안 법 §78의2)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br>○ 공장·지식산업센터 등 설치·운영분양·임대, 매각입주기업 근로자 후생복지·교육 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br>- 취득세 35%, 재산세 50%<br><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재설계 및 감면 연장<br>○ (좌 동)<br><br>- 취득세 25%(비수도권 35%)<br>재산세 25%(비수도권 50%)<br>※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비수도권 감면율 적용<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산업단지 개발·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 창업·벤처 중소기업 유치 및 지원시설 확충 지원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44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81)

□ 개정개요

| 현 행 | 정부안 |
|---|---|
| □ 이전공공기관의 부동산 및 법인등기 감면 | □ 감면 연장 |
| ○ (부동산) 취득세 50%<br>재산세 50% (5년간) | ○ (현행과 같음) |
| ○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 ○ (현행과 같음)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 |
|---|---|
| □ 이전공공기관 등 이주직원 주택 감면 | □ 감면 연장 |
| ○ (감면대상자)<br>-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br>-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b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9.12.31.이전 소속 공무원 | ○ (현행과 같음) |
| ○ (감면대상) 이전지역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br>- 전용면적 85㎡이하 : 면제<br>-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 75% 감면<br>- 전용면적 102㎡초과 : 62.5% 감면 | ○ (현행과 같음)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및 국가 정책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주거 안정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45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정비 (안 법§84)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감면대상 등 정비 |
| ○ (미집행) 용어 정의는 없으나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감면 제외하는 것으로 운영 중 | ○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감면 제외<br>-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감면 제외 |
| ○ (감면대상)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에만 감면 | ○ 국토계획법외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공공시설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br>- 도시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 등의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안을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감면 제외 |

□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혼란 방지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4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안 법 §85①)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 비영리법인의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 감면 연장 |
| ○ 취득세 25%, 재산세 25% | ○ (현행과 같음)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갱생보호사업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47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85의2)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지방공사 등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 감면 연장 |
| ○ 지방공사<br>- 취득세·재산세 50% | ○ (현행과 같음) |
| ○ 지방공단<br>- 취득세·재산세 면제 | ○ (현행과 같음) |
| ○ 지방출자·출연기관<br>- 취득세·재산세 50%<br>※ (실제 감면율) 감면율 × 지자체 투자비율 | ○ (현행과 같음) |

| | |
|---|---|
| ○ (일몰기한) 2025.12.31. | ○ (일몰기한) 2028.12.31. |
| □ (신설) | □ 사후관리 규정 신설<br>○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신축시 해당 토지는 2년)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br>○ 직접 사용일부터 2년 미만에 매각·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 |

□ 개정이유

○ 교육·문화 진흥 등 주민복리 증진 지원 및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48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88)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새마을운동조직·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면<br>○ 고유업무용 부동산<br>- 취득세·재산세 면제<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연장<br>○ (현행과 같음)<br><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지역공동체 나눔・돌봄 활동에 대한 지방세 지속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49 정당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 (안 법 §89)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정당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br>○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면제<br>○ 등록면허세(면허),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면제<br>○ (일몰기한) 2025.12.31. | □ 감면 연장<br>○ (현행과 같음)<br>○ (현행과 같음)<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지방세 지속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50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 등(안 법§90)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br>○ 주민의 공동소유 부동산<br>-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사업소·종업원) 면제<br>○ 주민의 공동소유 선박<br>- 취득세 면제<br><br>○ (일몰기한) 2025.12.31.<br><br>○ 사후관리 규정<br>-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 감면 세목 확대 등<br>○ 부동산 감면<br>-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면제<br>○ 재산세 등 감면 신설<br>-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면제<br>○ (일몰기한) 2028.12.31.<br><br>○ 사후관리 규정 완화<br>-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신축시 해당 토지는 2년)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 개정이유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지원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51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조문 정비(안 법 §167의3)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 인용조문 변경 반영 |

| | |
|---|---|
| ○ 납부서 발송 인용조문<br>(「지방세법」 제95조제4항) | ○ 납부서 발송 인용조문<br>(「지방세법」 제95조제5항)<br>※제4항 신설에 따라 제5항으로 이동 |

□ 개정이유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발송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52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안 법§167의5)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br>○ (적용대상) 인구감소지역에 본·지점 등이 소재하는 법인<br>○ (적용요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고용<br>* 고용시점에 해당 법인 소재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br>○ (적용내용)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고용한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한도 없음)<br>○ (사후관리) 3년 이내 폐업·해산 등 사유시 추징<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주민 고용 유인 제고 및 주민 정착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53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안 법 §167의6)

□ 개정개요 ※ 국세 동반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br>○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세율 1.4%~3.5%)을 적용<br>○ (일몰기한) 2028.12.31. |

□ 개정이유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

## 54 중과세율 적용 배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법 §180의2)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중과적용 배제특례<br>○ 리츠, 부동산펀드, PFV의 경우 취득세 대도시 중과 배제<br>○ (신 설) | □ 추징규정 신설<br>○ (현행과 같음)<br>○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특례대상이 아니게 되는 경우 추징 |

□ 개정이유

○ 리츠, 부동산펀드, PFV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내 특례 대상이 아니게되는 경우에 대한 추징규정 부재

- 추징규정 신설을 통해 감면 합리성 제고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55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유예기간 연장 (안 법률 제15295호 부칙§7)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도시철도공사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시기<br>○ (적용시기) 2026. 1. 1. | □ 적용시기 유예<br>○ (적용시기) 2029. 1. 1. |

□ 개정이유

○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56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 대한 경과조치 적용기간 연장 (안 법률 제19232호 부칙§11)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br>○ '23. 1. 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 적용<br>○ (일몰기한) 2025. 12. 31. | □ 경과조치 적용기간 연장<br>○ (현행과 같음)<br>○ (일몰기한) 2028. 12. 31. |

□ 개정이유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 지원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V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정의 명확화(안 법§2)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가변적 정의 규정<br>○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여부에 따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여부 결정 | □ 정의 규정 명확화<br>○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규정 |

□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가변적 정의로 징수 현장에서 관리·운영에 어려움 발생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계법을 행정안전부장관 고시의 별표로 규정

□ 개정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법§3)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법의 적용범위 규정<br>○ 관계법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체납된 경우 이 법을 적용 | □ 법의 적용범위 확대·재설정<br>○ 관계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적용 |

□ 개정이유

○ 부과·징수과정에서의 납부자 권리 보장 지원 및 개별 근거법령과 동법 간 경합 문제 해소를 위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필요

□ 개정시기

○ 202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3 과오납금으로 인한 환급 관련 규정 신설(안 법§7의7, 영§5의16~19)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 □ 환급 관련 규정 신설<br>○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직권 지급제도 운영 근거 신설 |

□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환급 절차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없어 환급 누락 등 국민의 재산 손실 및 행정 비효율 발생

- 환급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해 국민 재산 보호 및 환급 절차 운영 효율화

□ 개정시기

○ 2026. 1. 1. 이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4 징수유예 및 분납 규정 신설(안 법§7의9, 영§5의12~14)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신 설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유예 등<br>○ 천재지변,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 개정이유

○ 징수유예·분할납부 규정 신설을 통해,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및 납부 편의 제공를 제공함으로써 납부자 권리 보장 및 징수율 제고

□ 개정시기

○ 2026. 1. 1. 이후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5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객관성 확보(안 법§16)

□ 개정개요

| 현 행 | 개 정 안 |
|---|---|
| □ 체납처분의 중지<b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추산가액이 우선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 □ 체납처분 중지 심의 절차 마련<br>○ 체납처분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함 |

□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 중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절차의 객관성·정당성 확보

□ 개정시기

○ 2026. 1. 1. 이후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 통 화 명 | 8월 1일(금) | 8월 4일(월) | 8월 5일(화) | 8월 6일(수) | 8월 7일(목) |
|---|---|---|---|---|---|
| 미 달 러 (USD) | 1390.40 | 1399.30 | 1383.90 | 1386.70 | 1389.50 |
| 위 안 화 (CNH) | 193.18 | 193.95 | 192.70 | 193.20 | 193.15 |
| 일 본 엔 (JPY) | 922.78 | 950.10 | 943.42 | 939.66 | 943.89 |
| 유 로 화 (EUR) | 1588.8 | 1620.60 | 1604.13 | 1605.31 | 1620.43 |
| 영 국 파 운 드 (GBP) | 1836.72 | 1857.99 | 1841.29 | 1844.17 | 1856.23 |
| 캐 나 다 달 러 (CAD) | 1003.65 | 1015.35 | 1005.66 | 1006.79 | 1011.28 |
| 홍 콩 달 러 (HKD) | 177.13 | 178.26 | 176.43 | 176.66 | 177.02 |

| 통 화 명 | 8월 8일(금) | 8월 11일(월) | 8월 12일(화) | 8월 13일(수) | 8월 14일(목) |
|---|---|---|---|---|---|
| 미 달 러 (USD) | 1384.20 | 1386.00 | 1388.30 | 1390.20 | 1383.80 |
| 위 안 화 (CNH) | 192.97 | 193.00 | 193.05 | 193.24 | 192.66 |
| 일 본 엔 (JPY) | 942.50 | 938.07 | 936.74 | 940.72 | 940.05 |
| 유 로 화 (EUR) | 1615.71 | 1614.20 | 1612.44 | 1623.41 | 1620.29 |
| 영 국 파 운 드 (GBP) | 1861.47 | 1863.20 | 1864.97 | 1876.91 | 1879.34 |
| 캐 나 다 달 러 (CAD) | 1007.61 | 1007.67 | 1007.77 | 1009.73 | 1006.14 |
| 홍 콩 달 러 (HKD) | 176.34 | 176.57 | 176.86 | 177.12 | 176.30 |

| 통 화 명 | 8월 18일(월) | 8월 19일(화) | 8월 20일(수) | 8월 21일(목) | 8월 22일(금) |
|---|---|---|---|---|---|
| 미 달 러 (USD) | 1382.20 | 1385.30 | 1389.40 | 1397.50 | 1398.10 |
| 위 안 화 (CNH) | 192.94 | 192.78 | 193.29 | 194.56 | 194.80 |
| 일 본 엔 (JPY) | 938.52 | 936.39 | 940.95 | 948.13 | 942.15 |
| 유 로 화 (EUR) | 1618.56 | 1616.16 | 1618.10 | 1628,16 | 1623.40 |
| 영 국 파 운 드 (GBP) | 1874.06 | 1871.12 | 1874.23 | 1879.92 | 1875.69 |
| 캐 나 다 달 러 (CAD) | 1000.47 | 1003.62 | 1001.98 | 1007.28 | 1005.39 |
| 홍 콩 달 러 (HKD) | 176.60 | 177.16 | 178.16 | 178.89 | 178.92 |

| 통 화 명 | 8월 25일(월) | 8월 26일(화) | 8월 27일(수) | 8월 28일(목) | 8월 29일(금) |
|---|---|---|---|---|---|
| 미 달 러 (USD) | 1395.60 | 1386.30 | 1391.20 | 1395.70 | 1388.60 |
| 위 안 화 (CNH) | 194.46 | 193.71 | 194.35 | 195.11 | 194.14 |
| 일 본 엔 (JPY) | 948.65 | 937.92 | 943.51 | 947.52 | 944.79 |
| 유 로 화 (EUR) | 1634.60 | 1610.67 | 1619.57 | 1625.08 | 1621.61 |
| 영 국 파 운 드 (GBP) | 1886.01 | 1865.27 | 1875.13 | 1884.20 | 1875.86 |
| 캐 나 다 달 러 (CAD) | 1009.04 | 1000.40 | 1005.53 | 1012.51 | 1009.82 |
| 홍 콩 달 러 (HKD) | 178.56 | 177.46 | 178.50 | 179.25 | 178.18 |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 : //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